




해외 FTA 활용어로 해결 사례집

2012년 11월



관 세 청
KOREA CUSTOMS SERVICE



해외 FTA
활용어로
해결 사례집

2012년 11월





발간사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또 한번의 경제 도약을 위하여 주요 교역국들과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 미국, EU 등 8개 협정 45개 국가와 FTA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FTA는 계약상대국에서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최근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우리 기업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사례와 달리 적절하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 세관에서 불인정하는 등 해외 FTA 활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통해 해결한 52개 해외 FTA 활용예로사례를 협정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문제 발생시 기업이 벤치마킹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해결 방법 및 관련 규정 등도 함께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11월

관세청장

주명삼





I. 한-미 FTA 7

- 1. C/O 불인정 8
- 2. C/O 발급애로 15
-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26
- 4. 기타 36
- 〈한-미 FTA 참고자료〉 42



II. 한-EU FTA 61

- 1. C/O 불인정 62
- 2. C/O 발급애로 66
-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68
- 〈한-EU FTA 참고자료〉 71



III. 한-아세안 FTA 77

- 1. C/O 불인정 78
- 2.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92
- 3. 기타 97
- 〈한-아세안 FTA 참고자료〉 102



IV. 기타 협정 113

- 1. C/O 불인정 114
- 2. C/O 발급애로 118
-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120
- 〈기타 협정 참고자료〉 122



V. FTA 주요 지침 129

- ※ 해외 FTA 활용애로
신고 방법 및 연락처 안내 178

▶▶ <http://fta.customs.go.kr>



한-미 FTA

1. C/O 불안정
 2. C/O 발급애로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4. 기타
- 〈한-미 FTA 참고자료〉



1

C/O

불인정



C/O 발급예로

기타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한-미 FTA 참고자료

1. 원산지포괄증명 시작일이 발행일자 보다 앞선 경우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에서 선적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건으로 수출자에게 C/O 발급 요청한 결과, 선적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으로 포괄확인증명을 발급하여 제공
 - 담당 관세사에 문의한 결과, 포괄증명서 상의 포괄증명 시작일이 발행일자 보다 앞선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 미국 수출자에게 포괄증명이 아닌 과거 개별건에 대해서만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 문제 해결

- 한국 관세청은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제4호에 따라 증명일자 이전기간은 포괄 증명기간으로 기재할 수 없다는 입장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시에는 포괄증명이 아닌 개별건별 증명을 진행하는 것이 협정의 취지에 맞음
- 다만, 미국측(ustr)은 포괄증명 소급발급 인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간 입장차이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고자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 (*12.6.19)을 시달
 - 협정세율은 적용하되 FTA원산지조사부서에 인계

... 참고자료 : 1. 한-미 FTA 협정문 6.15조 발취(참고3)

2.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참고7)

I

II

III

IV

V

2. 원산지포괄증명이 수입신고 이후 발행된 경우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④ 애로 원인

- 미국 수입 유탄유에 대해 C/O를 제공받지 못해 MFN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한 뒤 포괄원산지증명을 발급받아 한-미 FTA 발효일 이후 통관분에 대해 사후적용 신청을 하려고 함
 - OO세관에서 포괄원산지증명서는 소급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 미국 수출자에게 발효일 이후 수입건별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각각의 건에 대한 C/O 발급에는 난색 표명

④ 문제 해결

- 한국 관세청은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제4호에 따라 증명일자 이전기간은 포괄 증명기간으로 기재할 수 없다는 입장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시에는 포괄증명이 아닌 개별건별 증명을 진행하는 것이 협정의 취지에 맞음
- 다만, 미국측(ustr)은 포괄증명 소급발급 인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간 입장차이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고자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12.6.19)을 시달
 - 협정세율은 적용하되 FTA원산지조사부서에 인계

... 참고자료 : 1. 한-미 FTA 협정문 6.15조 발췌(참고3)

2.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참고7)

3. 원산지포괄증명이 선적일 이후 발급된 경우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에서 받은 C/O상 증명일자는 '12.6.14, 원산지포괄기간은 '12.6.14~'13.6.30이나 화물 선적일은 '12.5.30임
 - 담당 관세사에 문의한 결과, 선적일이 포괄증명서 상의 포괄증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 미국 수출자에게 포괄증명이 아닌 과거 개별건에 대해서만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 문제 해결

- 한국 관세청은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제4호에 따라 포괄증명기간 내에 선적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 선적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시에는 포괄증명이 아닌 개별건별 증명을 진행하는 것이 협정의 취지에 맞음
- 다만, 미국측(USTR)은 선적일에 관계없이 포괄증명 기간 이내에 수입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양국간 입장차이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고자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12.6.19)을 시달
 - 협정세율은 적용하되 FTA원산지조사부서에 인계

... 참고자료 : 1. 한-미 FTA 협정문 6.15조 발취(참고3)

2.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참고7)

I

II

III

IV

V

4. 협정에 없는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기재-1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 측 바이어에 한국측 권고서식에 따라 한-미 FTA C/O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나, 원산지결정기준 부분 재작성 요구
 - 원산지결정기준 부분에 A, B, C 등의 조건을 기재 요구

▶ 문제 해결

- A, B, C 등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사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부호이므로 C/O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상 필수기재사항이 아님
 - 한-미 FTA에서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측 작성요령에도 원산지결정기준별 부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산지결정기준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계속 요구할 경우, 충족한 원산지결정기준 전문을 기재하도록 안내
 - 한국 권고서식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국 수입자에게 동 서식상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기재 강요는 어려움
- 한국 수출자가 관세청 안내사항을 미국에 통보, NAFTA 기준 대신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CTH)을 기재하여 발송

... 참고자료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C/O 양식 및 기재요령(참고6)

5. 협정에 없는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기재-2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 측에서 C/O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나 C/O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인 “B”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음
 - 담당관세사는 권고서식 상의 원산지결정기준(WO, PSR, PE)와 상이하므로 협정 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
- 미국 수출자에게 재발행 요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협정 적용을 위한 업무 처리방법 문의

○ 문제 해결

- A, B, C 등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사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부호이므로 C/O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상 필수기재사항이 아님
 - 한-미 FTA에서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고서식은 편의상 원산지결정기준 부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협정세율 적용은 가능하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권고서식 사용을 권유
 - 기존 C/O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

… 참고자료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C/O 양식 및 기재요령(참고6)

I

II

III

IV

V

6. 원산지 미표시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 거부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① 애로 원인

- 미국에서 수입한 세탁기 부분품에 대해 현품에 “미국산”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협정관세 적용 거부
 - 세탁기 부분품(8450.90호)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나 대외무역법 시행규칙 제82조 ①항 4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 면제

② 문제 해결

- 한-미 FTA 협정관세적용은 원산지표시와는 다른 법령이 적용되므로 원산지표시 문제만을 이유로 협정적용을 거부 할 수 없음을 안내
 - 적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미표시를 이유로 협정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FTA 특례법(제10조, 제16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관에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후 원산지 검증이 가능함
- 관세청에서 동 사항을 세관에 직접 설명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 협정세율 적용 및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비교 >

구분	협정세율 적용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협정문(한-미 FTA) FTA 특례법 FTA 특례법 고시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2

C/O

발급어로



C/O 불안정

기타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한-미 FTA 참고자료

1. 국내제조확인서를 통한 결정기준 충족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측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발급이 어려움
 -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 면사를 납품받아 면양말을 편직하는 업체이나 면사 납품 업체에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불가능 통보
 - ※ 면양말(6115호)은 면사(5205호)의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면사가 비원산지 재료로 분류될 경우, 원산지 기준 불충족

▶ 문제 해결

- 면사 생산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서 수행한 공정을 기재한 국내제조확인서를 제공하면 충족여부 재검토 가능함을 안내
 - 원산지확인서는 납품제품의 원산지만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어떤 공정이 수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 국내제조확인서는 납품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공정 및 투입된 비원산지재료 확인이 가능함
 - 비원산지원면(5203호)을 수입하여 면사를 생산한 경우, 면사는 원산지재료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비원산지원면(5203호)으로 양말(6115호)을 생산하면 양말은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가능
- 면사제조업체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원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C/O 발급

... 참고자료 : 1. 면양말 및 면사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참고8)

2.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관련 규정,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9)

2. 상대국 수입자의 원사기준 충족 근거자료 제공 요청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측에서 수출물품인 양말에 대한 한-미 FTA C/O 발급과 함께 투입원자재 중 면사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음
 - 면사 생산업체 확인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

○ 문제 해결

- 면사 생산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서 수행한 공정을 기재한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면 해결 가능함을 안내
 - 원산지확인서는 납품제품의 원산지만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어떤 공정이 수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 국내제조확인서는 납품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공정 및 투입된 비원산지재료 확인이 가능함
 - 비원산지원면(5203호)을 수입하여 면사(5205호)를 생산한 경우, 면사는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비원산지원면(5203호)으로 양말(6115호)을 생산하면 양말은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가능
- 면사제조업체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원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C/O 발급
 - 제출받은 국내제조확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입자에 제공

... 참고자료 : 1. 면양말 및 면사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참고8)

2.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관련 규정,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9)

I

II

III

IV

V

3. 납품업체의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요청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국내 양말 생산업체에 면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달리 국내제조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
 - 비원산지원면(5203호)을 수입, 면사를 생산하며 기존 한-EU, 한-아세안 FTA시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만을 요청하였으나, 한-미 FTA 발효 후 국내제조확인서 제출을 요청
-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및 작성 방법 문의

▶ 문제 해결

- 여타 FTA와 달리 한-미 FTA에서는 원면(5203호)을 수입하여 면사(5205호) 생산시, 한국산 면사로 인정받지 못함을 안내
 - 현재 동 업체의 면사 생산형태상, 원산지만 확인하여 작성하는 원산지확인서로는 양말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비원산지원면(5203호)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면사(5205호)를 생산한 경우, 동면사로 양말(6115호)을 생산하면 양말은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가능
 - 면사 생산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서 수행한 공정을 기재한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면 해결 가능함을 안내
- 국내제조확인서 발급방법을 안내받아 최종제품 수출자에게 발급

... 참고자료 : 1. 면양말 및 면사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참고8)

2.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관련 규정,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9)

4. 화학제품의 주1을 활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측에서 한-미 FTA C/O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결과 충족하지 않아 어려움
 - 해당 업체는 실란트제품(2931,90)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자체 검토 결과,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역외산 원재료 중 HS4단위가 같은 품목이 있어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불가능하며, 최소기준 적용도 불가능

< 2931.90호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HS	원산지결정기준
2902-293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2902호 내지 293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문제 해결

- 제6부 화학제품(제28류-제38류)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제6부의 주1에 따라 규칙1~규칙7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인정 가능 안내
 - 화학반응 여부 확인을 위한 분자식 구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규칙1(화학반응 원산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수입자에게 제출

I

II

III

IV

V

〈 2931.90호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자	(기재예시)
주1	<u>제6부의 규칙 내지 규칙7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 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u>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 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u>화학반응 원산지</u> <u>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u>
주	<u>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u>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수출자	(기재예시)
규칙 3	<p>혼합 및 배합</p> <p>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규칙 4	<p>입자 크기의 변화</p> <p>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규칙 5	<p>표준 물질</p> <p>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p>
규칙 6	<p>이성체 분리</p> <p>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규칙 7	<p>분리 금지</p> <p>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p>



5. 미소기준을 활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측에서 한-미 FTA C/O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결과 충족하지 않아 어려움
 - 해당 업체는 여성의류(6104.44호)를 생산하는 업체이나, 역외산 재봉사(5204호)를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6104.44호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41호 내지 제61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문제 해결

- 6104.44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변경기준이나, 면재봉사(5204호)는 제외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어 원산지기준 불충족
 - 면재봉사 외 투입 자재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 다만, 비원산지 재료인 면재봉사의 중량이 완제품 중량의 7% 미만인 경우, 원산지 제품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
 - 한-미 FTA 협정문 6.6조(섬유제품은 4.2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원산지 제품 인정 가능
- 자체 검토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함을 확인하여 C/O 발급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중략)

최소허용수준

7.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를 포함하는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제7항의 목적상,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이라 함은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슈트의 추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슈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제6.6조(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제7항이 제7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I

II

III

IV

V

6. 식초 품목번호 재검토를 통한 원산지기준 충족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측에서 한-미 FTA C/O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결과 충족하지 않아 어려움
 - 해당 업체는 식초음료(2209.00호)를 생산하는 업체이나, 투입된 원재료(식초)와 품목번호가 동일하여 원산지결정기준(CTH) 불충족
- C/O 미발급시 미국측 바이어의 계약 파기 우려됨

▶ 문제 해결

- 동사 생산물품인 식초음료는 단순한 식초가 아니며, 2106호의 호해설 12에 따라 2106.90호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블루베리와 복분자 등의 과일을 발효한 식초에 과실즙스 및 감미제 등을 첨가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2106.90호 분류 가능
 - 2106.90호 분류시 식초(2209.00호)가 투입되더라도 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가능
 - ※ 유사제품(현미식초, 사과즙, 포도당액, 벌꿀 등으로 조제한 희석음료)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106.90호로 분류한 사례 있음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수출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 후 FTA 활용 권장



제2106호(기타조제식료품)의 호해석 12 발췌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2)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raspberry)·블랙커런트(blackcurrent)·레몬·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첨가한 것(구연산 또는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이 호의 합성조제품[상기(7)을 참조]이 첨가된 향미있는 시럽으로서 특히 콜라에센스 및 구연산을 함유하며 캐러멜화 당으로 착색한 것 또는 구연산 및 과실(예: 레몬 또는 오렌지)의 정유를 함유한 것
-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해당 과실 등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주스로 향미를 내게한 시럽
-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산분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과실의 정유·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

< 제2106.90호 원산지결정기준 >

HS	원산지결정기준
2106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5호, 제2009호 또는 제2202.90호 제외)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로 변경된 것</p> <p>다음으로부터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로 변경된 것:</p> <p>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202.90호에 해당하는 혼합주스, 제0805호 또는 제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또는</p> <p>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제21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혼합 주스.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과실 또는 채소주스 또는 주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p> <p>※ 제2106.90호의 알콜성 합성 조제품, 당시럽 및 제2106.90호외 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생략</p>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C/O 불안정

기타

C/O 발급예로

한-미 FTA 참고자료

1. 플라스틱 성형기기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발생

-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C/O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간 품목분류 상이로 미국 바이어가 C/O상 HS 정정 요청
 - 플라스틱 성형기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3920.10호로 분류하나, 미국측은 3921.90호로 분류
 - 수출입자 확인 결과, 양국 모두 관세당국에서 해당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등 유권해석 받은 사항 없음

○ 문제 해결

- 업체 제공 자료 검토 결과, 수출물품은 3920.10(CTH) 및 3921.90(CTH)의 원산지결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 두 품목번호 모두 세율혜택이 동일(4.2% → 3.7%)이므로 미국내에서 저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자 조작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제공하도록 안내

I

II

III

IV

V

2. 신발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④ 애로 발생

-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C/O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간 품목분류 상이로 미국 바이어가 C/O상 HS 정정 요청
 - 수출물품(신발)에 대해 우리나라는 6403.19호로 분류하나, 미국측은 6403.99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EU에도 6403.19호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수출중임

④ 문제 해결

- 두 품목번호의 미국내 협정세율이 0%로 동일하며 미국측 수입신고서 등의 자료 검토 결과, 6403.99호로 신고됨을 확인
 - 업체 확인 결과, 6403.99호의 원산지결정기준도 충족함을 확인

< 6403.19호 및 6403.99호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HS	원산지결정기준
6401-6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제6401호 내지 제6405호 제외) 제6401.10호 또는 6401.91호 또는 항목 6401.92aa, 6401.99aa, 6401.99bb, 6401.99cc, 6402.30aa, 6402.30bb, 6402.30cc, 6402.91aa, 6402.91bb, 6402.91cc, 6402.99aa, 6402.99bb, 6402.99cc, 6404.11aa 또는 6404.19aa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직접법으로 역내부가가치가 55%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함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64류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 미국측 요청 품목번호(6403.99호)에 따라 한-미 FTA C/O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

1) 한-미 FTA 협정문 부록 6-가-1의 상관관계표 참조

3. 트레킹화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발생

-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C/O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간 품목분류 상이로 미국 바이어가 C/O상 HS 정정 요청
 - 수출물품에 대해 우리나라는 6404.19호(기타 신발)로 분류하나, 미국측 바이어는 외형상 일반 운동화와 유사하므로 6404.11호(스포츠용 신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 유사제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의 6404.19 분류 사례 확인
- 6404.11호로 분류시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미국시장 개척이 어렵게 되므로 6404.19호로 분류되는 논리적 근거를 문의

○ 문제 해결

- 64류의 소호주의 스포츠용신발류의 정의에 따라 트레킹화는 6401.11호가 아닌 6401.19호로 분류됨이 타당함을 안내
 - HS 해설서상 관련 규정 및 유사 품목에 대한 6401.19호 분류 사례에 대한 분류 논리를 수출자에게 제공
- 부산세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수출자는 수입자를 설득

▶ 제64류 소호주 발취

1. 소호 제6402.12호 · 제6402.19호 · 제6403.12호 · 제6403.19호 및 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신발류”라 함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 · 스프리그 · 스톱 · 클립 ·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 부츠 · 스키부츠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 레슬링부츠 · 복싱부츠 및 사이클화

I

II

III

IV

V

4. 연마용 조제품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④ 애로 발생


- 미국으로부터 유백색 액상의 연마용 조제품을 수입하였으나 C/O상 품목번호와 우리나라에서 분류한 품목번호가 상이
 - 실리카, 알칼리화합물 등을 기제로 한 유백색 액상의 연마용 조제품에 대해 한국은 3405.40호, 미국은 3405.90호로 분류
 - ※ 3405.40호는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회시 결과임
- 세관에서는 품목번호 상이를 이유로 협정적용이 거부되었으며, 수출자도 품목번호 정정을 거부하여 해결 요청

④ 문제 해결

- 관세청에서 시달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12.3.12)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
 -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도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한국측 품목번호(3405.40)는 C/O상 품목번호(3405.90)와 4단위가 동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CTH)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관 담당자와 연락, 협정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여 해결
 - 다만, 원칙적으로 C/O상에는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 동 사항을 요구하도록 주지시킴

... 참고자료 : 한-미 FTA 운영지침 발췌(참고10)

5. 신발 부자재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발생

- 미국으로부터 신발제조용 부자재를 수입하였으나 C/O상 품목번호(5903.90호)와 우리나라에서 분류한 품목번호(5903.20호)가 상이
 - 5903.20호에 대한 2012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은 0%이고 5903.90호는 8% 인데 세관에서 5903.20호 협정세율 적용에 부정적 입장
 - ※ 5903.20호는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회시 결과임

○ 문제 해결

- 관세청에서 시달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12.3.12)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
 -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도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한국측 품목번호(5903.20호)는 C/O상 품목번호(5903.90호)와 2단위가 동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HS	원산지결정기준
5903 - 59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5903호 내지 59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1호~5113호, 제5208호~5212호, 제5310호~5311호, 제5407호~제5408호, 제5512호~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 세관 담당자와 연락, 협정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여 해결
 - 다만, 원칙적으로 C/O상에는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 동 사항을 요구하도록 주지시킴

... 참고자료 : 한-미 FTA 운영지침 발췌(참고10)

- I
- II
- III
- IV
- V

6. 구운김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발생

- 수입국에서 수출품목(구운김)에 대한 C/O 발급을 요청하나 양국간 품목분류와 이에 따른 원산지기준이 상이하여 어려움 발생
 - 우리나라에서는 2106.90호로 분류하나, 미국에서는 2008.99호로 분류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혼란 발생
 - 비교적 간단한 원산지결정기준(CC)이 적용되는 2106.90호와 달리, 2008.99호 분류시 20류 주1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 2008.99호(기타 채소과실의 조제품)는 조미김에 대한 미국측 공식 품목분류 사례임 (HQ950002 등)

▶ 문제 해결

- FTA 특혜관세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하도록 규정
 - 미국 측 품목분류는 공식의견이며, 2008.99호로 분류할 근거 역시 충분하므로 미국측 의견에 따라 C/O 발급할 것을 안내
 - 수출자 제출자료에 따라 2106.90호 및 2008.99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20류의 주1 규정 검토 결과, 해당 제품은 모두 충족함을 확인
- 수출자는 미국측 요구대로 2008.99호를 기재하여 C/O 발급



• 2008.99호 원산지결정기준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 제20류 주 〉

원문	국문
<p>Fruit, nut and vegetable preparations of headings 20.01 through 20.08 that have been prepared or preserved by freezing, by packing (including canning) in water, brine, or natural juices, or by roasting, either dry or in oil (including processing incidental to freezing, packing, or roasting) shall be treated as originating only if the fresh good wer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p>	<p>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한 품목번호 2001부터 2008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에 한정한다)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주 2는 조미김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기재 생략)</p>

〈 한-미 FTA 제2008.99호의 품목별 원산지규정 〉

원문	국문
<p>Chapter 20 :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 2008.19 – 2008.99 A change to subheading 2008.19 through 2008.99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as provided for in the Note to Chapter 20.</p>	<p>20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8.19 – 20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0류의 주1 및 주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p>

• 2106.90호 원산지결정기준

아. 기타 : 다른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 품목번호 버전 상이에 따른 C/O발급 곤란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④ 애로 발생

-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료품에 대해 C/O 발급 요청을 받았으나 관세청 FTA 포털을 찾아 봐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이 불가능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못하여 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및 C/O 발급도 불가능

④ 문제 해결

- 관세청 FTA포털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연계표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함을 안내
 - 한-미 FTA가 2006년에 체결되면서 양허표와 원산지결정기준이 2002버전으로 작성되었으나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품목번호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음
 - 기획재정부 '12.2.24일에 시달한 연계표(HS2002↔HS2012)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품목번호에 대한 협정문상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함

📄 연계표 확인 방법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 FTA일반 > 공지사항 > 250번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연계표, 2012→2002” 클릭

- 아울러,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C/O상 품목번호는 미국측 한-미 FTA 집행 지침에 따라 TCRs(Tariff Change Rules) 개정 전까지 HS2012, HS2002 품목번호를 모두 병기해야 함
- 품목번호 연계표에 따라 2002 버전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협정문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C/O 발행·해결



HS전환 관련 미국측 지침 발취

• 검색방법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 FTA일반 > 공지사항 > 12번 “(한-미 FTA) 미측 세율 · 원산지결정기준 · 이행지침 자료 등 공지” 클릭

• 미측 이행지침 해설(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발취

라 HS2012 시행에 따른 원산지판정 및 수입신고 요령

- 특혜관세적용 판정은 HS2002(한미FTA는 협정 시 기준)가 기준
 - HS2002/HS2012 간 품목분류 코드가 상이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분간 두 코드를 모두 신고서에 기재
 - 한국 수입통관의 경우 특혜관세적용기준은 HS2002로 판단, 수입신고서 상 품목번호는 HS2012에 따라 기재토록 권고 (관세청 이행지침)
 - HS2012의 협정반영은 양국 간 협의 중이며, 협의 완료 시 공표예정

• 미측 이행지침 발취

Origination Analysis and Certification when no Tariff Change Rule Exists
 Manufacturers, exporters and importers are advised that the UKFTA tariff change rules (TCRs) were negotiated using the 2002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Goods assigned new classification numbers in 2007 and 2012, to correspond to World Customs Organization approved modifications, will not find corresponding TCRs in GN 33(o).

- Until revised TCRs are published, manufactures of affected goods should classify both the good and its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2002 HTSUS when performing the TCR analysis.
- Until revised TCRs are published, the certification should indicate both the current HTSUS number and the corresponding 2002 HTSUS number used to perform the TCR analysis.

I

II

III

IV

V

4 기타



C/O 불인정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C/O 발급예로

한-미 FTA 참고자료

1. 관세혜택 없는 품목도 물품취급수수료 혜택 가능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한-미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품목의 대부분(IC, 냉장고, 청소기)이 FTA로 인한 관세혜택 없음
 -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산품목에만 협정세율이 적용

○ 문제 해결

-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면제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안내
 - 미국에서는 통합예산총괄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 시 송장금액의 0.3464%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의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부과(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언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
 - 한-미 FTA 협정문 제2.10조 제4항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을 하게 되면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
- MFN 세율 0% 품목 등 관세양허혜택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수수료 감면 혜택 향유

... 참고자료 : 1. 한-미 FTA 협정문 2.10조(참고1)

2. 미 관세청 사이트의 물품취급수수료 부과기준 안내(참고2)

I

II

III

IV

V

2. 관세혜택 없는 품목의 물품취급수수료 환급 가능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한-미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어(0301.99호)는 미국측 MFN세율이 0%로 인한 관세혜택 없음
 - 광주세관 컨설팅 결과, 한-미 FTA 협정상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면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설명을 듣고, 기 수출한 제품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가능 여부 타진

▶ 문제 해결

- 미국 국내법상 수리 후 1년 이내에 물품취급수수료 환급 가능함을 안내
 - 미국에서는 통합예산총괄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 시 송장금액의 0.3464%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의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부과(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언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
 - 한-미 FTA 협정문 제2.10조 제4항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을 하게 되면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
 - 아울러, 한-미 FTA 협정문 제6.19조 제5호 및 미국 19 CFR에서는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물품취급수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한-미 FTA C/O 발급하여 미국 수입자에 송부, 물품취급수수료 환급

... 참고자료 : 1. 한-미 FTA 협정문 2.10조(참고1)

2. 미 관세청 사이트의 물품취급수수료 부과기준 안내(참고2)



협정문 제6.16조(수입관련 의무) 제5호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략)



19 CFR 중 한-미 FTA 통관 관련 규정(Subpart R)

- Subpart B 목차 (사후적용 및 물품취급수수료 관련 부분 밑줄)

General Provisions

10.1001 Scope.

10.1002 General definitions.

Import Requirements

10.1003 Filing of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pon importation.

10.1004 Certification.

10.1005 Importer obligations.

10.1006 Certification.

10.1007 Maintenance of records.

10.1008 Effect of noncompliance; failure to provide documentation regarding transshipment.

Export Requirements

10.1009 Certification for goods exported to Korea.

Post-Importation Duty Refund Claims

10.1010 Right to make post-importation claim and refund duties.

10.1011 Filing procedures.

10.1012 CBP processing procedures.

I

II

III

IV

V

Rules of Origin (10.1013~10.1025)

Origin Verification and Determinations (10.1026~10.1029)

Penalties (10.1030~10.1033)

Goods Return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10.1034)

• 19 CFR 중 사후적용 및 물품취급수수료 관련 규정 발췌

§ 10.1002 General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the following terms will have the meaning indicated unless either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used requires a different meaning or a different definition is prescribed for a particular section of this subpart :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eans a claim that a good is entitled to the duty rate applicable under the UKFTA to an originating good and to an exemption from the merchandise processing fee. (중략)

§ 10.1010 Right to make post-importation claim and refund duties.

Notwithstanding any other available remedy, where a good would have qualified as an originating good when it wa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but no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made, the importer of that good may file a claim for a refund of any excess duties at any time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importation of the goo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in § 10.1011 of this subpart.

Subject to the provision of § 10.1008 of this subpart, CBP may refund any excess duties by liquidation or reliquidation of the entry covering the good in accordance with § 10.1012(c) of this subpart.

• 검색 방법

미 관세청 홈페이지(cbp.gov) > TRADE 클릭 > "Search Trade for"에 "UKFTA" 기재 · 검색 > SMART LINKS 밑의 "KOREA (UKFTA)" 클릭 >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Interim Regulations" 클릭

3. 세번변경기준 물품에 대한 가격자료 제공 요청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미 FTA (미국)



○ 애로 원인

-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 관련하여 미 세관에서 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가격부분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청
 - 세번변경기준 물품에 대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판단됨
 - 특히 수입자를 통해서 제출할 경우, 미국 영업시 타격 불가피

○ 문제 해결

- 수입자를 통하지 않고 미 세관에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되,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
 - 미 세관의 자료요청은 실제 당해 물품의 국내 제조 여부가 핵심이므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영업비밀인 가격부분을 제하고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제공을 통한 문제해결을 권유
- 미 세관에 관련자료를 직접 제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기 제출한 BOM 등의 자료에 가격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I

II

III

IV

V

한-미 FTA 참고자료



C/O 불안정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기타

C/O 발급예로



참고 1

한-미 FTA 협정문 제2.10조

< 협정문 제2.10조(행정 수수료 및 형식) >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이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 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물품취급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참고 2

미 관세청 홈페이지 물품취급수수료 안내

- 검색방법 : 미 관세청 사이트(www.cbp.gov)로 접속,
“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검색
- 본문 내용

제목 : Merchandise Processing Fee Increase

(10/26/2011)Recent trade legislation, H.R. 2832, was signed into law on October 21, 2011, changing the 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 rate for formal entries from 0.21% (.0021) to 0.3464% (.003464), effective October 1, 2011. The minimum and maximum fees, \$25 and \$485 respectively, did not change. CBP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modifying our automated systems to accept the new MPF rate of 0.3464%. We do not have an estimated completion date at this time; however, we will notify the trade as soon as possible via the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when filers may begin transmitting entry summary information with the new MPF rate.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For entries filed on or after October 1, 2011, until the CBP system changes take effect with the 0.3464% rate, CBP will bill the importer for the increase in MPF. CBP will disregard differences of less than \$20.

I

II

III

IV

V



참고 3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발취

<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발취 >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나.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라.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마. 동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증명일, 그리고

아.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4. 각 당사국은 증명이 다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

**참고 4****한-미 FTA C/O 권고서식(한국)**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Name		2. BLANKET PERIOD From: ___/___/___ To: ___/___/___ YYYY/MM/DD to YYYY/MM/D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3. PRODUCER	Name		4. IMPORTER	Name	
	Address			Address	
	Telephone			Telephone	
	Fax			Fax	
	E-mail			E-mail	
5. LIST OF PRODUCT(S) SUBJECT TO PROOF OF ORIGIN					
Serial No.	Description of Good(s)	Quantity & Unit	HS No (6 Digits)	Preference Criterion	Country of Origin
6. OBSERVATIONS					
<p>I certify t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p>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p>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YYYY/MM/DD			Telephone :		Fax:

- 1) Originating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 **WO**
- 2) Originating goods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regional value content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 **PSR**
- 3) Originating goods (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 **PE**



Instructions on Comple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Recommended Form under KORUS FTA

Box #	Data Element	Instructions on Completion
1	Ex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no., fax no. and e-mail address of the exporter of record of the good (If different from the producer)
2	Blanket Period	Provide the blanket period in "from YYYY/MM/DD to YYYY/MM/DD" format (12 month maximum from the date of the Certification)
3	Produc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no., fax no. and e-mail address of the producer of record of the good (If known)
4	Im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fax and e-mail of the importer of record of the good (If known)
5	Serial No.	To indicate serial no. in case where there are more than two products subject to proof of origin
	Description of Good(s) (★)	Description of the good(s)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late it to the invoice
	Quantity & Unit	The Quantity & Unit of the good(s) shall be indicated to relate it to the invoice
	HS2002 No. (★)	HS tariff classification, to six or more digits, as specified for each good in the Rules of Origin (2002 HTS-Korea)
	Preference Criterion	To indicate the preference criterion applied to the good(s); -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 'WO' -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 'PSR' -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 'PE'
	Country of Origin (★)	Indicate 'US', 'USA', 'United States' or 'United States of America'
6	Observations	If applicable, provide observations in relation to the proof of origin
	Authorized Signature	The signee must have access to the underlying records and the legal authority to bind the company
	Company	
	Name (★)	
	Title	
	YYYY/MM/DD (★)	The date of the certification
	Telephone	The telephone no. and fax no. of the signee of the good
Fax		
※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appealed when compulsory elements (with '★') are incomplete.		



ATTACHMENT A

DATA ELEMENTS FO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ION OF ORIGIN

1.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importer of record of the good.

2.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exporter of the good.
(If different from the producer).

3. Name and address of the produc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producer of the good.
(If known).

4. Description of good:

The description of a good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late it to the invoice and the Harmonized System (HS) nomenclature.

5.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The HS tariff classification, to six or more digits, as specified for each good in the Rules of Origin.

6. Preference criterion:

The rule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b) or Article 6.1 of the Agreement. In the case of a product-specific rule specified in General Note 33(o) or Annex 4-A or 6-A of the Agreement, please be specific as to which rule was applied.

7. Single shipment:

Provide the commercial invoice number.

8. Multiple shipments of identical goods:

Provide the blanket period in “mm/dd/yyyy to mm/dd/yyyy” format. (12-month maximum)

9.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e-mail, and certification date:

The signee must have access to the underlying records and the legal authority to bind the company. This field shall include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and e-mail.

10.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II

III

IV

V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This document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ature:

Tit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Dat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98
Exp. 03-31-2012
See back of form for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Please print or type

19 CFR 181.11, 181.22

1. EXPORTER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FROM				
TAX IDENTIFICATION NUMBER:		TO				
3. PRODUCER NAME AND ADDRESS		4. IM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ENTIFICATION NUMBER:		TAX IDENTIFICATION NUMBER: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NET COST	10. COUNTRY OF ORIGIN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UNLESS SPECIFICALLY EXEMPTED IN ARTICLE 411 OR ANNEX 401,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ND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a. AUTHORIZED SIGNATURE		11b. COMPANY	
11c. NAME (Print or Type)		11d. TITLE	
11e. DATE (MM/DD/YYYY)	11f. TELEPHONE NUMBER	(Voice)	(Facsimile)

CBP Form 434 (04/97)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This information is needed to carry out the terms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NAFTA requires that, upon request, an importer must provide CBP with proof of the exporters written certific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s. The certification is essential to substantiate compliance under the terms of the NAFTA Free Trade Agreement. You are required to give us this information to obtain a benefit.

The estimated average burden associated with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15 minutes per respondent or recordkeeper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Comments concerning the accuracy of this burden estimate and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should be directed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formation Services Branch, Washington, DC 20228, an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aperwork Reduction Project (1651-0098), Washington DC 20503.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NSTRUCTIONS

For purposes of obtain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is document must be completed legibly and in full by the exporter and be in the possession of the importer at the time the declaration is made. This document may also be completed voluntarily by the producer for use by the exporter. Please print or type:

- FIELD 1:** State the full legal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and legal tax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exporter. Legal taxation number is: in Canada, employer number or importer/exporter number assigned by Revenue Canada; in Mexico, federal taxpayer's registry number (RFC); and in the United States,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or Social Security Number.
- FIELD 2:** Complete field if the Certificate covers multiple shipments of identical goods as described in Field #5 that are imported into a NAFTA country for a specified period of up to one year (the blanket period). "FROM" is the date upon which Certificate becomes applicable to the good covered by the blanket Certificate (it may be prior to the date of signing this Certificate). "TO" is the date upon which the blanket period expires. The importation of a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reatment is claimed based on this Certificate must occur between these dates.
- FIELD 3:** State the full legal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and legal tax identification number, as defined in Field #1, of the producer. If more than one producer's good is included on the Certificate, attach a list of additional producers, including the legal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and legal tax identification number, cross-referenced to the good described in Field #5. If you wish this information to be confidential, it is acceptable to state "Available to CBP upon request". If the producer and the exporter are the same, complete field with "SAME". If the producer is unknown, it is acceptable to state "UNKNOWN".
- FIELD 4:** State the full legal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and legal tax identification number, as defined in Field #1, of the importer. If the importer is not known, state "UNKNOWN"; if multiple importers, state "VARIOUS".
- FIELD 5:** Provide a full description of each good. The description should be sufficient to relate it to the invoice description and to the Harmonized System (H.S.) description of the good. If the Certificate covers a single shipment of a good, include the invoice number as shown on the commercial invoice. If not known, indicate an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such as the shipping order number.
- FIELD 6:**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5, identify the H.S. tariff classification to six digits. If the good is subject to a specific rule of origin in Annex 401 that requires eight digits, identify to eight digits, using the H.S.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country into whose territory the good is imported.
- FIELD 7:**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5, state which criterion (A through F) is applicable. The rules of origin are contained in Chapter Four and Annex 401. Additional rules are described in Annex 703.2 (certain agricultural goods), Annex 308.5, Appendix 6 (certain textile goods) and Annex 308.1 (certain automatic data processing goods and their parts). **NOTE: In order to be entitled to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each good must meet at least one of the criteria below.**

Reference Criteria

- A** The good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NAFTA countries as referenced in Article 415. **Note: The purchase of a good in the territory does not necessarily render it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f the good is an agricultural good, see also criterion F and Annex 703.2. (Reference: Article 401(a) and 415)
- B**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NAFTA countries and satisfies the specific rule of origin, set out in Annex 401, that applies to its tariff classification. The rule may include a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or a combination thereof. The good must also satisfy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Chapter Four. If the good is an agricultural good, see also criterion F and Annex 703.2. (Reference: Article 401(b))
- C**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NAFTA countries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Under this criterion, one or more of the materials may not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wholly produced or obtained", as set out in article 415. All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ust qualify as "originating" by meeting the rules of Article 401(a) through (d). If the good is an agricultural good, see also criterion F and Annex 703.2. Reference: Article 401(c).
- D** Goods are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NAFTA countries but do not meet the applicable rule of origin, set out in Annex 401, because certain non-originating materials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The goods do nonetheless meet the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specified in Article 401(d). This criterion is limited to the following two circumstances:
 1. The good wa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NAFTA country in an unassembled or disassembled form but was classified as an assembled good, pursuant to H.S.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2(a), or
 2. The good incorporated one or more non-originating materials, provided for as parts under the H.S., which could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because the heading provided for both the good and its parts and was not further subdivided into subheadings, or the subheading provided for both the good and its parts and was not further subdivided.**NOTE: This criterion does not apply to Chapters 61 through 63 of H.S. (Reference: Article 401(d))**
- E** Certain automatic data processing goods and their parts, specified in Annex 308.1, that do not originate in the territory are considered originating upon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NAFTA country from the territory of another NAFTA country when the most-favored-nation tariff rate of the good conforms to the rate established in Annex 308.1 and is common to all NAFTA countries. (Reference: Annex 308.1)
- F** The good is an originating agricultural good under preference criterion A, B, or C above and is not subject to a quantitative restriction in the importing NAFTA country because it is a "qualifying good" as defined in Annex 703.2, Section A or B (please specify). A good listed in Appendix 703.2B.7 is also exempt from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is eligible for NAFT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f it meets the definition of "qualifying good" in Section A of Annex 703.2. **NOTE 1: This criterion does not apply to goods that wholly originate in Canada or the United States and are imported into either country. NOTE 2: A tariff rate quota is not a quantitative restriction.**
- FIELD 8:**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5, state "YES" if you are the producer of the good. If you are not the producer of the good, state "NO" followed by (1), (2), or (3), depending on whether this certificate was based upon: (1) your knowledge of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2) your reliance on the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other than a Certificate of Origin)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r (3) a completed and signed Certificate for the good, voluntarily provided to the exporter by the producer.
- FIELD 9:**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5, where the good is subject to a regional value content (RVC) requirement, indicate "NC" if the RVC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net cost method; otherwise, indicate "NO". If the RVC is calculated over a period of time, further identify the beginning and ending dates (MM/DD/YYYY) of that period. (Reference: Article 402.1, 402.5).
- FIELD 10:** Identify the name of the country ("MX" or "US" for agricultural and textile goods exported to Canada; "US" or "CA" for all goods exported to Mexico; or "CA" or "MX" for all good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to which the preferential rate of CBP duty applies, as set out in Annex 302.2, in accordance with the Marking Rules or in each party's schedule of tariff elimination.
For all other originating goods exported to Canada, indicate appropriately "MX" or "US" if the goods originate in that NAFTA country, within the meaning of the NAFTA Rules of Origin Regulations, and any subsequent processing in the other NAFTA country does not increase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s by more than seven percent; otherwise indicate "JNT" for joint production. (Reference: Annex 302.2)
- FIELD 11:** This field must be completed, signed, and dated by the exporter. When the Certificate is completed by the producer for use by the exporter, it must be completed, signed, and dated by the producer. The date must be the date the Certificate was completed and signed.



참고 7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12.6.19)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의 포괄증명 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와 포괄증명 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업무 처리시
 - 협정관세 적용 후 관할 FTA원산지조사업무 담당부서로 인계



참고 8

면양말 및 면사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6115호(면양말)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5205호(면사)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5까지 및 5501부터 5507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I

II

III

IV

V



참고 9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관련 규정, 양식 및 기재요령

1. 관련 규정(FTA 특별법 시행규칙)

•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략)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략)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2-1.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 및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31>

원산지 (포괄)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1.공급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2.공급처 (수출자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공급물품 명세서

3.연번	4.품명 · 규격	5.적용대 상협정	6.품목번호 (HS 6단위)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제공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 내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급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공급처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품명·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5	적용대상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6	품목번호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원산지기준</th> <th style="width: 40%;">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td> <td>- WO</td> </tr> <tr> <td>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td> <td>- CC - CTH - CTSH</td> </tr> <tr> <td>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 BD - BU - MC - NC</td> </tr> <tr> <td>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td> <td>- CTSH - BD</td> </tr> <tr> <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td> <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td> </tr> <tr> <td>바. 주요공정기준</td> <td></td> </tr> <tr> <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td> </tr> </tbody> </table>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원산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0. 12. 01(작성일) - 2011. 11. 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2-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양식 및 기재요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1.6.30>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쪽)

1. 발급번호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공급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4. 공급처	전화/FAX					
	E-mail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5. 공급물품 명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FAX					
E-mail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 생산공정	
6. 비원산지재료 명세						
공급물품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비고

7.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이 확인서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고, 이 확인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 확인서를 제공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물품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확인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작성자 성명	회사명
작성자 서명	직위
(년) (월) (일)	전화번호:
___/___/___	FAX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발급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제조 포괄확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 확인서로 봅니다.
3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4	공급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 공급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5	공급물품 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및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6	비원산지재료 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등을 적습니다.
7	확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줄 부분에 첨부서류를 포함한 총 매수를 적습니다.
8	작성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회사명, 서명, 직위, 작성일 및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 권고서식(붙임), 또는,
-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협정문에서 정한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를 기재하여도 적용 가능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 가능

※ 항목별 설명

①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이외 동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되어 연락가능한 정보 (예: E-mail, 전화번호)를 기재
③~④항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와 '생산자'중 하나의 항목은 반드시 기재
⑤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 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⑥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이 동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 (예시)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⑦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⑧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포괄증명"이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ashed lines.

- I
- II
- III
- IV
- V

▶▶ <http://fta.customs.go.kr>



한-EU FTA

1. C/O 불안정
2. C/O 발급애로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한-EU FTA 참고자료〉





1

C/O

불인정



C/O 발급애로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한-EU FTA 참고자료

1. 수입신고 수리 후 소급 발급된 C/O 거부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EU FTA (스페인)



○ 애로 원인

-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소급 발급하였으나, 스페인 세관은 FTA 특혜관세 소급적용 거부
 - 협정상에는 수입신고 수리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특혜관세 소급적용 근거가 없음
- 스페인 바이어는 수리후 인증수출자 지정 및 협정관세 소급적용에 대한 영어로 된 관련 규정이나 근거자료 요청

○ 문제 해결

- 협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측수석대표간에 소급적용해주기로 2011.7.18일에 합의하였음을 확인
 - 미인증 업체의 경우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 부여
- EU집행위원회의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외교부로부터 입수하여 스페인 측에 송부

... 참고자료 : 1. 원산지신고서 소급발행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참고1)

2. EU 집행위원회의 위원 보고서 내용 발췌(참고2)

I

II

III

IV

V

2. 수입신고 수리 후 소급 발급된 C/O 거부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EU FTA (폴란드)



▶ 애로 원인

- '11.10.3일에 선적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하였으나, 폴란드 세관은 FTA 특혜관세 소급적용 거부
 - 협정상에는 수입신고 수리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특혜관세 소급적용 근거가 없음
- 폴란드 바이어는 수리후 인증수출자 지정 및 협정관세 소급적용에 대한 영어로 된 관련 규정이나 근거자료 요청

▶ 문제 해결

- 협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측수석대표간에 소급적용해주기로 2011.7.18일에 합의하였음을 확인
 - 미인증 업체의 경우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 부여
- EU집행위원회의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외교부로부터 입수하여 폴란드 측에 송부
 - 수차례 지연처리 끝에 2012.6.14 폴란드 바이어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감사 메일 수신

... 참고자료 : 1. 원산지신고서 소급발행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참고1)

2. EU 집행위원회의 위원 보고서 내용 발췌(참고2)

3. 타협정의 원산지증명서(EUR1) 요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EU FTA (이태리)



○ 애로 원인

-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이태리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협정관세 적용 배제
 - 로마 세관에서 한-EU FTA가 아닌 EUR1 제출을 요구하면서, EUR1이 아닌 경우 관세혜택 배제 통보
 - 수입자를 통해 EUR1은 한-EU FTA와 상관없으며 적용대상아니라고 회신하였으나, 로마세관에서 불인정
 - ※ EUR1은 EU 국가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 인정을 위해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로 한국산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문제 해결

- 수입국 세관에 한-EU 협정상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제출시 협정적용 가능하다는 한국 관세청 의견 전달하여 해결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부속서 3에 따라 한국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함을 피력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조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하략)

I

II

III

IV

V

2

C/O

발급어로



C/O 불인정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한-EU FTA 참고자료

1. 상대국 수출자 C/O 소급발급 거부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EU FTA (루마니아)



○ 애로 원인

- 루마니아 수입 제품에 대한 FTA 사후적용 신청을 위해 원산지신고서 소급발급을 요청 하였으나 수출자가 발급 거부
 - 루마니아 업체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전에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EU FTA C/O 발급 거부
- FTA 사후적용신청 기한('12.6.30)* 경과시 사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더라도 FTA 협정 세율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
 - 관련 합의사항 및 관련자료를 수입자를 통해 제공하고 e-mail을 통해 설명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수출자는 소급발급 거부
 -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사적 문제로 한국 관세청 개입에 한계
 - *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2개월임

○ 문제 해결

- '12.5.22 국제원산지컨퍼런스에 참석한 루마니아 관세청 직원에게 수출업체 대상 관련 규정 설명 요청
 - 루마니아 관세청 직원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인증 수출자인 경우, 소급발급이 가능함을 직접 설명
- 수출자가 C/O 소급발급하여 수입자는 '12.6.29일에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통해 관세 및 내국세 환급 완료

... 참고자료 : 1. 원산지신고서 소급발행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참고1)

2. EU 집행위원회의 위원 보고서 내용 발췌(참고2)

I

II

III

IV

V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1. 구운김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EU FTA (EU)



○ 애로 발생

- 수입국에서 수출품목(구운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나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해 인증수출자 지정에 어려움
 - 우리나라에서는 2106.90호로 분류하나, 수입국에서는 2008.99호로 분류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시 혼란 발생

○ 문제 해결

-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EU측 분류 품목 번호에 대해서도 추가 인증 처리
 - 수입국에서 품목번호를 달리 운영하고 있음이 '품목번호 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통해 확인되고, 해당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동 품목을 추가하여 인증 가능
 - EU측의 품목분류 확인서를 첨부하고, 한국 품목번호(2106.90) 및 EU 품목번호(2008.99)를 동시에 인증심사·지정
- 수출자는 지정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여 조미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여 EU측에 제출함

... 참고자료 :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처리지침(참고3)

I

II

III

IV

V

2. 음향증폭세트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EU FTA (EU)



④ 애로 발생

- 수입국에서 수출품목(음향증폭세트)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나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해 인증수출자 지정에 어려움
 - 우리나라에서는 8518.50호(음향증폭세트)로 분류하나, 수입국에서는 8519.81호(음성 녹음 또는 재생기기)로 분류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시 혼란 발생

④ 문제 해결

-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EU측 분류 품목 번호에 대해서도 추가 인증 처리
 - 수입국에서 품목번호를 달리 운영하고 있음이 '품목번호 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통해 확인되고, 해당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동 품목을 추가하여 인증 가능
 - EU측의 품목분류 확인서를 첨부하고, 한국 품목번호(8518.50) 및 EU 품목번호(8519.81)를 동시에 인증심사·지정
- 수출자는 지정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여 EU측에 제출함

... 참고자료 :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처리지침(참고3)



한-EU FTA 참고자료



C/O 불인정

C/O 발급예로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제11-629호 배포일시 : 2011.7.18(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제 목 : 정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키로 EU측과 합의

1. 한·EU 양측은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부여하기로 양측 수석대표(우리측 최석영 FTA교섭대표, EU측 Bercero 한·EU FTA 수석대표)간 상호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예) 수출자가 2013.12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한·EU FTA 잠정발효 후 동 시점까지 EU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 납부한 MFN 관세외 한·EU FTA 특혜관세간의 차액만큼 관세를 환급받음.

2. 금번 합의에 따라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 EU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실적(2011.7.8 기준)
 - 대상기업수 기준 : 54.6%
 - 수출금액 기준 : 83.9% 끝.

외교통상부 대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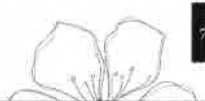


What is an 'origin declaration' and who can issue it?

Contrary to the situation in certain other FTAs, certificates of origin will not be issued by customs authorities and the EUR 1 form will not be accepted as a proof of origin. Instead, exporters will have to issue an 'origin declaration' themselves. However, in order to be entitled to do so, they will have to apply for the status of an 'approved exporter' with their national customs authority, unless they export consignments of products whose total value does not exceed € 6 000. In this case, there is no need for the exporter to be an 'approved exporter', as any exporter can make out the origin declaration.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consignments not exceeding € 6 000 which can be exported.

An origin declaration has to be made out when the products to which it relates are exported, or after exportation, but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importation into Korea and two years after importation into the EU.

A declaration of origin issued after exportation should be valid, provided that the exporter has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at the time he makes the declaration, even if at the time of exportation he was not an approved exporter.



Origin declaration

The request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EU-Korea FTA is made on the basis of an 'origin declaration'. The following text (in one of the 23 EU languages or in Korean) is to be included by the exporter on an invoice, a delivery note or any commercial document which describes the products involved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m to be identified: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In order to become an 'approved exporter', companies have to make an application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y are established and keep their records. The procedures for granting 'approved exporter' status depend on Member State national provisions. Their main point is to make sure that the company knows the rules applicable and that the customs authorities will be able to verify at any time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for which preferential treatment has been requested.

When an exporter has been approved by the customs authority, they will grant him an authorisation number which he must quote on the invoice declaration.

The customs authorities will carry out regular controls on authorised exporters. These controls must ensure continued compliance with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and may be carried out at intervals determined, if possible, by risk analysis criteria. The Korean customs authorities are not allowed to come to the premises of

any EU approved exporters for control, except under very specific conditions and subject to the previous agreement by the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control takes place. Such visits must always be in the presence of EU customs authorities.

Should the approved exporter be found to have abused or misused his authorisation, the customs authorities are entitled to withdraw it.

There are special transitional rules for goods which were either in transit, or in the EU or Korea in temporary storage, in customs warehouses or in free zones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FTA, i.e. on 1 July 2011. Provided that such products meet the other requirements of the FTA, they can benefit from this preferential treatment of origin declaration so long as it is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before 1 July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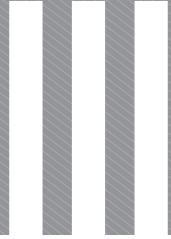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ashed lines.

- I
- II**
- III
- IV
- V

▶▶ <http://fta.customs.go.kr>



한-아세안 FTA

1. C/O 불안정
 2.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3. 기타
- 〈한-아세안 FTA 참고자료〉





1

C/O

불인정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기타

한-아세안 FTA 참고자료

1. 전자발급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1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베트남)



○ 애로 발생

- 수출자는 서울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C/O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제공하였으나 베트남 세관에서 전자발급 C/O는 불인정
 - 자필 서명된 서류원본만을 인정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
- 우리 시스템상 수출자의 서명을 등록한 경우, C/O 발급시 함께 출력되어 나오므로 수정 불가능

○ 문제 해결

- 서울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문 및 이행위원회 합의상 전산발급도 가능하다는 점을 베트남 세관에 제시하여 해결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제8차 관세원산지소위 SOD 발췌(참고1)

I

II

III

IV

V

2. 전자발급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2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④ 애로 발생

- (1차) 전자발급된 우리나라 C/O에 대해 프린트물로 인쇄된 것은 가짜라며 적용을 거부
 - 태국 방콕세관은 인장이 직접 날인되고 자필 서명된 C/O를 요구
- (2차) 진본임을 증명하자 주방용품(3924.10호)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의 작성방식을 문제삼고 협정적용 거부
 - 주방용품(3924.10호)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변경 또는 RVC40%이상”이나 “CTH + RVC 69.7%”로 기재 하였다고 문제 제기
 - ※ 둘 중에 하나만 충족(선택기준)하면 되나, 모두 충족한 것으로 기재(조합기준)하였으므로 협정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④ 문제 해결

- (1차) 해당 C/O의 유효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해결
 - 관세청 C/O 진위 확인 사이트 안내를 통한 적정 발급 확인
 - 전자 인장 · 서명을 인정한다는 제8차 이행위 결정문을 제공
- (2차) 태국측 요청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수정 · 해결
 - 아울러,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협정문 부속서 1 제12조에 따라 인정할 것을 촉구

... 참고자료 : 1. 한-아세안 FTA 제8차 관세원산지소위 SOD 발체(참고1)

2.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 C/O 진위 확인 사이트(참고2)

3.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I 제12조(참고3)

3. 전자발급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3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필리핀)



○ 애로 원인

- 상공회의소에서 전자발급 방식으로 C/O를 발급받아 필리핀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원본이 아니라며 불인정
 - 필리핀세관은 인장이 직접 날인되고 자필 서명된 C/O를 요구
- 아울러 2012년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C/O가 발행되어 수입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더라도 2011년 협정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

○ 문제 해결

- 인천세관에서 필리핀 세관 당국에 다음의 내용을 설명한 공식 서한문을 발송하여 해결
 - ① 전자발급 방식을 인정한 이행 협의문에 대한 발췌본
 - ② 2012년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자료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제8차 관세원산지소위 SOD 발췌(참고1)

I

II

III

IV

V

4. 전자발급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4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④ 애로 발생

- 서울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태국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전자인장 형태라며 거부
 - 스탬프 형태의 인장을 날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 태국 세관에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가 도착하였으나, 통관을 못하여 창고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④ 문제 해결

- 서울세관 담당자가 기존 발급된 C/O에 스탬프 형태의 인장을 별도 날인하여 태국세관에 제공하여 해결
- 전자인장 · 서명은 제8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 인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계약상대국에 철저한 준수 요청 필요
 - 문제해결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태국 관세관, 공식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전자 방식의 인장 · 서명이 인정됨을 명확히 해야 함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제8차 관세원산지소위 SOD 발췌(참고1)

5. 인장 서명 전달지연에 따른 인한 통관 지연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말련)



○ 애로 발생

- 서울세관에서 적정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통보 받지 못한 인장·서명이라며 협정적용 거부
 - 아세안 사무국 → 말련 관세청 → 말련 지역세관에 대한 관련 정보 전달이 지연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
- 말련 세관에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가 도착하였으나, 통관을 못하여 창고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 문제 해결

- 말레이시아 세관에 인장 및 서명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아래 문서를 말레이시아 세관에 직접 제공하여 해결
 - ① 관세청에서 아세안 사무국에 보낸 문서(인장·서명 변경 정보)
 - ② 서울세관의 인장·서명이 맞음을 확인하는 공식 서한문

I

II

III

IV

V

6. C/O와 송장상 기재금액 상이에 따른 통관지연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미얀마)



④ 애로 원인

- 미얀마에서 발행한 한-아세안 FTA C/O와 상업송장상 기재금액이 상이하여 한국 OO세관에서 협정적용 거부
 - 강남콩(0713.33호)을 수입하면서 미얀마 통상부에서 한-아세안 FTA C/O를 발급하였으나, C/O상 기재금액(FOB \$665)이 상업송장상 기재 금액(CNF \$565)보다 큼
 -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추천은 받았으나 CNF금액보다 FOB금액이 커 무역거래상식상 맞지 않아 협정적용 거부
- 미얀마 측에 C/O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일정금액 이하로는 C/O 발급이 불가능하여 C/O 금액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
 - 통관이 되지 않아 계속 창고보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공사 추천 기한이 1달 밖에 남지 않아 신속한 조치 필요

④ 문제 해결

- 검토 결과, 해당 제품이 원산지증명된 물품과 동일 제품이고 미얀마산임이 확인되므로 일부 경미한금액 차이가 있더라도 한-아세안 협정문 제12조에 따라 인정
 - 미얀마 발행 C/O상 완전생산기준(WO)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과 상관없이 미얀마산인 것으로 추정됨
- OO세관에 협정적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근거자료를 제시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I 제12조(참고3)

7. 6란 용량부족으로 별지 작성에 따른 통관 지연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 애로 원인

- C/O 6번란(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자리 부족으로 별지에 작성하여 발급하였으나, 태국 세관에서 불인정
 - 여타 국가와 달리 태국 세관은 C/O 6번란에 B/L상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 * 태국 외 대부분 아세안 국가 및 한국의 경우, 6번란은 기입하지 않거나 “1”, “2”, “3” 등 연번 형태로 기재하고 있음
 - 관세청 C/O 발급시스템 체계상 120byte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등록 가능하지만 120byte 초과시 별지 작성이 불가피

○ 문제 해결

- 태국세관과 협의하여 120byte 이내로 태국세관에서 요청한 기재내용으로 수정하여 재발행 · 해결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4)

I

II

III

IV

V

8. 제3국 송장 발행시 C/O에 업체주소 기재 요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 애로 원인

- 제3국 송장 발행시 C/O 발급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발급된 C/O에 대해 태국세관에서 주소 미기재를 이유로 협정적용 거부
 - 협정상 작성방법에 따라 제13란에 체크하고,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였음

▶ 문제 해결

- 태국세관에 주소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식서한을 송부하고, 유선통화를 통해 설명하여 해결

▶ 한-아세안 FTA C/O OVERLEAF NOTE 발취

9. 제3국 송장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4)

9. 수입국 도착항 기재 요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 애로 원인

- 서울세관에서 적정하게 발급한 C/O에 대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C/O와 달리 3번란에 도착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협정 적용 거부
 - 협정상 3번란(운송수단 및 경로)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as far as known)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착항은 기재사항도 아님
 - 그러나 상공회의소시스템에서는 현재 협정상 3번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출항일, 선명/편명, 적출항 외 도착항도 기재 가능함

○ 문제 해결

- 태국세관에 도착항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식서한을 송부하고, 유선통화를 통해 설명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4)

I

II

III

IV

V

10. C/O상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관련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캄보디아)



▶ 애로 원인

- 캄보디아에서 섬유제품에 대해 “Specific Process”로 기재된 C/O를 발급하였으나 기재 요령에 어긋난다며 협정적용 거부
 - 담당관세사는 한-아세안 FTA 섬유제품에 대해 “CTC + Specific Process”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
- 캄보디아 발급기관에 정정을 요청했으나, 협정상 C/O 기재요령에 따라 “CTC” 또는 “Specific Process”만 기재 가능하다고 거부

▶ 문제 해결

- 한국 관세청은 “CTC + Specific Process”로 표기하는 것이 한-아세안 FTA 협정 취지 상 옳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
 - 섬유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동시충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C/O상에서도 동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62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다만, 과거 상당기간 동안 “Specific Process”로 표기한 것을 명시하여 인정해 왔으므로 체결당사국간에 합의 될 때 까지는 동 표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안내
 - 동 내용을 관세사에게 설명하여 협정적용 신청 · 적용

… 참고자료 : 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4)

2.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관련 공문(참고6)

11. 규정에 맞지 않은 소급발급 문구 기재 요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 애로 원인

- 선적일로부터 2일후에 소급발급하였으나 태국세관에서 협정문 부록1의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문구인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적용 거부
- 태국 세관에 수출물품이 도착하였으나, 통관을 못하고 대기 중

○ 문제 해결

- 제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에서는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까지는 소급발급하더라도 동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합의
 - 한-ASEAN FTA 부록1 제7조 제4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 곧바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수출 직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적일로부터 며칠까지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행을 통해 수출직후(Soon thereafter)의 의미를 선적일로부터 3일로 합의
 - ※ 한-인도 CEPA는 제4.4조에서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C/O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급발급 문구를 기재하도록 명시
- 한국 관세청에서 제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여 협정세를 적용

I

II

III

IV

V



1.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록 1 제7조

Rule 7

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3.
2.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while the good is passing through its territory, provided that:
 - (a) a valid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 presented;
 - (b)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intermediate Party are the same; and
 - (c) ver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Rule 14 is applied.
3. Upo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Rule and the implementation thereof, and revise it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4.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has not been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 due to involuntary errors, omissions or other valid causes, a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retroactively but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2. 한-인도 CEPA 제4.4조 4항

Article 4.4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4. The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within seven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whenever the goods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originating in that Party. Under exceptional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has not been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within seven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due to involuntary errors or omissions, or any other valid reasons, the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retroactively but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in Remarks box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THE 10th MEETING OF THE ASEAN-KORE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AK-STROO)

12-14 October 2009, Seoul, Korea

Summary of Decisions

INTRODUCTION

1. The 10th Meeting of the ASEAN-Kore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AK-STROO) was held on 12-14 October 2009 in Seoul, Korea.

(중략)

AGENDA ITEM 6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 OF THE AKFTA ROO

6.1 Rule 7 - Retroactive Issuance of CO – Understanding of “Soon Thereafter”

22. The Meeting noted that ASEAN and Korea were of the same understanding the “soon thereafter” which should be taken as “not more than 3 days 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 The Meeting agreed the revision would only be incorporated into the OCP when the OCP is reviewed.

(하략)

I

II

III

IV

V

2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C/O 불안정

기타

한-아세안 FTA 참고자료

1. 스크린 바스켓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 애로 발생

- OO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C/O상 HS에 대해 태국에서 분류하는 HS와 다르다는 이유로 협정적용 거부
 - 한국에서는 8439.99호로 분류하고 있으나, 태국측에서는 품목번호가 8421.91이며 정정하지 않을 경우, 협정적용 불가 통보
 - ※ 원칙적으로는 HS6단위는 전세계 공통이나 국가간 품목분류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생

○ 문제 해결

-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자의 자의석 해석 여부 검토
 - 해당품목의 수입신고필증, 관세율표, 해설서, 사유서 등을 확인
- OO상공회의소에서 기 발급된 C/O 2건을 태국측 품목번호(8421.91)로 수정발급하여 태국 바이어에 송부, FTA 혜택 받음
 - 태국측 품목번호 의견에 따라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재검토한 후, 해당 품목번호로 수정하여 발급
 - ※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에서는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4)

I

II

III

IV

V

2. Delinking Agent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④ 애로 발생

- OO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C/O상 HS에 대해 태국에서 분류하는 HS와 다르다는 이유로 협정적용 거부
 - 한국에서는 3824.90호로 분류하고 있으나, 태국측에서는 품목번호가 3402.90이며 정정하지 않을 경우, 협정적용 불가 통보
 - ※ 한국측의 3824.90호는 '05.3월 관세평가분류원 분류 결과임

④ 문제 해결

-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자의 자의석 해석 여부 검토
 - 해당품목의 수입신고필증, 관세율표, 해설서, 사유서 등을 확인
- OO상공회의소에서 기 발급된 C/O를 태국측 품목번호(3402.90)로 수정하여 발급하여 태국 바이어에 송부, FTA 혜택 받음
 - 태국측 품목번호 의견에 따라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재검토한 후, 해당 품목번호로 수정하여 발급

※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에서는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4)

3.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베트남)



○ 애로 발생

- (1차) 수입자의 업무착오로 수출자측에 한-아세안 FTA C/O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수입 통관단계에서 협정적용 받지 못함
 - 수입품목(8516.80)은 8%의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품목임
- (2차) 동 제품에 대해 수출국(베트남)에서 수입국(한국)과 다르게 품목분류하여 현지 C/O 발급에 애로 발생
 - ※ 한국측의 8516.80호는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항임

○ 문제 해결

- (1차) 수입통관 전에 C/O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리일로부터 1년내 C/O를 제출 하면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함을 안내
- (2차) 수입국 HS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한-아세안 FTA C/O 작성요령 및 우리측 품목 분류 사유를 베트남 세관에 제시
 - 해당물품은 자동차용 Seat 내부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한 형상을 갖추고 자동차 전원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물품으로 '8516.90'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설득
- 베트남 세관에서 8516.80으로 한-아세안 FTA C/O를 소급발급하여 FTA 협정세율 소급 적용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4)

I

II

III

IV

V

4. HS2012버전으로 C/O 발행 요청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④ 애로 발생

- 한-아세안 FTA 협정문상 HS2012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측에서 HS2012버전으로 C/O 발행 요청
 - 한국측에서는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HS2007 분류 품목 번호인 1212.20호로 기재하여 C/O를 발행
 - 수입업체에서는 해당 품목번호는 태국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HS2012호에서 사용되는 1212.21호로 C/O 발행해달라고 요청
- ※ 2012.09월 기준 한-아세안 FTA 협정문상 HS2012 버전 업데이트 작업 진행중(협정세율표는 국가별로 국내법에 반영)

④ 문제 해결

- HS2007 → HS2012 연계표를 검토한 결과, 동일 품목이 맞는 것을 확인한 후 업체 사유서를 제출받아 C/O 수정 발행
 - 해당 품목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 수정발행에 문제 없음
- 아울러, 태국측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문상 원산지결정기준이 2007 버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발행한 C/O도 문제없다는 의견 송부

... 참고자료 : HS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영 기준 공지(참고5)

3 기타



C/O 불인정

한-아세안 FTA 참고자료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1. 수입단가 인하 목적의 수입자 허위 문제 제기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베트남)



④ 애로 발생

- 천안세관에서 발급한 C/O에 대해 통보받지 못한 인장·서명이라며 베트남 관세당국에서 협정적용을 거부한다고 수입자측에서 통보
 - 검토 결과, 동 인장·서명은 '12년 4월 인사이동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아세안 사무국 측에 적절하게 통보된 것으로 확인
- 베트남 수입자 측에서는 1주일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계약해지하겠다고 위협

④ 문제 해결

- 아세안 사무국 및 관세청 인장·서명 담당자에 적정 통보 여부 확인
 - 우리측 통보 후, 인장·서명은 접수 즉시 베트남 관세청 및 각 세관당국에 전파되었음을 확인
- 관세관을 통해 베트남 관세당국에 직접 확인
 - 베트남 바이어가 원자재 구매가격을 낮추려는 속셈으로 인장·서명을 의도적으로 문제삼은 것으로 확인
- 협정세율을 적정히 적용받고, 기존 계약도 문제없이 진행

2. 수입자에 의한 계약 취소 목적의 C/O 하자 문제 제기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베트남)



○ 애로 발생

- 상공회의소 발급 C/O의 서명 파일 배경에 음영이 추가됨에 따라 베트남 세관에서 진위여부를 의심하며 협정적용을 거부
 - 상공회의소 확인 결과, 음영이 들어간 형태의 동 서명파일은 1년간 바뀌지 않을 예정이며 재발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 베트남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거부하고, 한국 관세청의 확인만을 요청하며 통관 불허하고 있다고 베트남측 바이어 통보
 - 베트남 바이어는 C/O 미해결시 계약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기존 계약 물량의 선적 보류에 따른 CY 적체 비용 발생

○ 문제 해결

- 상공회의소에 관련 C/O의 진위 여부 검토 요청한 결과, 해당 C/O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회신 받음
 - 동일한 문제 반복을 막기 위해 상공회의소 측에 C/O 발급시스템 개선 요청 → 발급시스템 개선 완료
- 부당한 제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현지 관세관이 베트남 관세당국에 직접 접촉한 결과 수입자의 허위 문제제기임을 확인
 - 현지 수입자가 국제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을 취소하려는 속셈으로 C/O 하자를 의도적으로 문제삼음
 - 사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모두 받았으며 수출계약 유지

I

II

III

IV

V

3. 정정과정에서 C/O 제출기간 만료를 이유로 수리거부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 애로 원인

- C/O를 태국 방콕세관측 요청에 따라 3차례 정정 후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 경과를 사유로 수리 거부
 - 서울세관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즉시 태국에 수입신고하였으나, 태국 방콕세관측 요청에 따른 3차례 정정과정에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자 제출기한 경과를 사유로 수리 거부

▶ 문제 해결

- 태국 주재 관세관을 통해 협정상 발행일로 6개월이 미경과한 상태에서 수입신고하였다면 적용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 태국 관세청으로부터 '발급일자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C/O 제출시 수리 가능' 답변 획득 ('11.11월)
- 서울세관에서 최초 C/O 발급 전산기록 삭제후 재발급('11.12월)한 뒤 동 C/O를 방콕 세관에 제출하여 최종 수리('12.3월)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록1 제10조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우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중략)
3. 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4. 상세 기재요령이 없는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견 표시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ASEAN FTA (태국)



◉ 애로 발생

- 태국측은 2106.90호 제품에 대해 한국(세관, 상의)에서 발행한 C/O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식에 문제 제기
 - 2106.90호의 원산지기준은 RVC40% 이상이며 일부 원재료는 완전생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RVC40%만 기재

2106.90호 원산지결정기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함

◉ 문제 해결

- 우리측은 등 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기재요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RVC 00%” 외 기재 불가능하다는 의견 전달
 -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이행위 등을 통해 구체적 기재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여타 품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입장 전달

…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4)

〈 원산지기준 기재요령 〉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O”
(나)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4.1항을 충족하는 물품	“CTH” or “RVC 40%”
(c)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	
- 세번변경 Tariff Classification	- “CTC”
-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 “WO-AK”
- 역내부가가치 (RVC)	- “RVC 00%”
- 역내부가가치 + 세번변경	- “CTH + RVC 00%”
- 특정 공정	- “Specific Processes”
(마)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	“Rule 6”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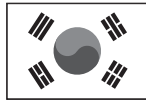
한-아세안 FTA 참고자료



C/O 불인정

기타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THE 8th MEETING OF THE ASEAN-KORE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AK-STROO)

13-15 July 2008, Bangkok, Thailand

Summary of Decisions

INTRODUCTION

1. The 8th Meeting of the ASEAN-Kore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AK-STROO) was held on 13-15 July 2008 in Bangkok, Thailand.

(중략)

AGENDA ITEM 5: RULES OF ORIGIN

5.2 Electronically-Signed and Stamped CO Issuance System

18. Malaysia and Viet Nam confirmed their acceptance on the electronically-signed and stamped CO system of Korea. Having this confirmation, all ASEAN Member States have confirmed their acceptance of this system.

(하략)

I

II

III

IV

V



참고 2

세관 및 상공회의소 발행 C/O 진위 확인 사이트 안내

1. 세관 발행 C/O 확인 방법

- 관세청 영문홈페이지(<http://english.customs.go.kr>) > Information Plaza > Certificate of Origin에 접속
- 공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Search”를 클릭하면 해당 C/O 정보 확인 가능
 - ID : C/O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 기재
 - PW : Reference No. 아래 있는 Reference Code 기재

2. 상공회의소 발행 C/O 확인 방법

- 대한상공회의소 영문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english>) > Reference System에 접속
- 공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Check it out”을 클릭하면 해당 <참고2> 세관 및 상공회의소 발행 C/O 진위 확인 사이트 안내C/O 정보 확인 가능
 - ISSUED YEAR : C/O 발행년도를 선택
 - ID : C/O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 기재
 - PW : Reference No. 아래 있는 Reference Code 기재



참고 3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1 제12조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서 1 제12조 >

1.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2.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상에 신고된 다수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발생한 문제로 나머지 품목의 특혜관세대우 적용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항 다호는 문제되는 당해 품목에 적용될 수 있다.

참고 4

한-아세안 FTA C/O 양식 및 기재요령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 I
- II
- III
- IV
- V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브루나이 다루살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다.	

2. 조건 : AKFTA의 특혜관세를 누리려면 상기 어느 당사국에 송부된 물품은 ,
 (i) 목적국의 양허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ii) AKFTA의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에 따른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iii)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 충족 물품에 대해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이 서식 제 8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서식 제11란의 최초 국가내 생산 또는 제조환경	제8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O"
(나)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4.1항을 충족하는 물품	"CTH" or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세번변경 Tariff Classification -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y - 역내부가가치 (RVC) - 역내부가가치 + 세번변경 - 특정 공정	"CTC" "WO-AK"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 예 "RVC 45%"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결합규정 : 예, "CTH + RVC 40%" - 특정 공정
(마)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	"제6조"

4. 각 품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5. 품명 : 물품의 명세는 그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물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해야 한다. 제조자 이름, 상표도 특정되어야 한다.
 6. 통일부호체계 번호 : 통일부호체계 번호는 수입국의 번호를 말한다.
 7. 수출자 :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8. 담당자 기재란 :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9. 제3국 송장 :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
 10. 전시물품 :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영절차 제20조에 따라,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해 수출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어, 전시 중 또는 전시 후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을 위해 팔린 경우, "전시물품"란에 (√)로 표시된다.
 11. 연결 원산지 증명서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영절차 제7조2에 따라 "연결 원산지 증명서" 란에 (√)로 표시한다.

**참고 5****HS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영 기준**

■ 공지 일자 : '11.12.30

■ 공지 사항 검색 방법

•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 FTA일반 > 공지사항 > 239번 선택

■ 공지 내용

• HS 2012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12.1.1) 시행될 예정이나, 기발효 FTA의 품목별원산지결정 기준(PSR)은 현재 시행중인 통합품목분류표(HS 2007)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잠정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발효 FTA 7개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 협정관세율 "HS 2012" 기준, PSR "HS 2007" 기준

■ 공지 사항 캡처

● 공지사항 홈 > FTA 일반 > 공지사항

상세 보기			
제목	HS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 공지	등록일	2011-12-30 17:32: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77
내용	<p>HS 2012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12.1.1) 시행될 예정이나, 기발효 FTA의 품목별원산지 결정기준(PSR)은 현재 시행중인 통합품목분류표(HS 2007)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잠정 적용할 예정입니다.</p> <p>(기발효 FTA, 7개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p> <p>⇒ 협정관세율 "HS 2012" 기준, PSR "HS 2007" 기준</p> <p>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p> <p>붙임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HS 연계표 1부. 끝</p>		
첨부파일	<p> FromHS2012toHS2007.hwp [976 KB]</p> <p> FromHS2012toHS2007.pdf [1 M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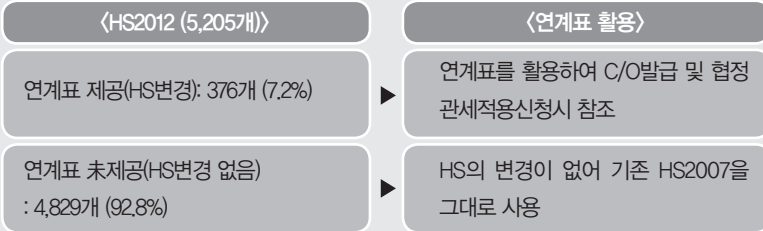


원산지 기준 연계표 (HS 2012 → HS 2007)

■ (목적) 제5차 HS협약 개정안(HS2012)이 '12.1.1일부터 시행

- 기 발효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 원산지 기준(HS 2007)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고 자료

■ (활용) HS가 변경된 376개 품목의 수출입시 연계표 활용



※ HS2007-HS2012 변경 품목(주로 농축수산물과 화학관련 생상품 변경)

동식물성 생상품	300개	섬유 · 신발 · 모자류	6개
광물성 생상품	2개	석면 · 시멘트 · 금속	6개
화학공업 연관 생상품	36개	기계 · 차량	12개
가죽제품 · 목재	5개	광학기기 · 정밀기기 · 잡품	9개

■ (사용방법) 수출입신고는 HS2012기준, C/O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HS2007기준으로 품목번호 기재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HS 2012		HS 2007	
품목번호	정의	품목번호	정의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 (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8714.11	안장
		8714.19	기타

〈안장수출입시〉

- 수출입신고서 상 HS는 2012기준으로 8714.10 기재
- C/O발급 및 협정관세적용신청시 HS는 2007기준으로 8714.11로 기재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도 2007 PSR기준으로 판단

● 본 연계표는

2012년 1월 1일 시행되는 품목분류표(HS 2012)에 맞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 개정되지 않은 기 발효 FTA에 대한 원산지 기준(HS 2007)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고 자료입니다.

(예) 당나귀(0101.30)를 수입하는 경우 2011.12.31일 현재 시행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HS2007)에 따라 번식용의 것(0101.10)과 기타(0101.90)에 해당되는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명

※ 동 연계표는 국제관세기구(WCO)에서 발간하는 연계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품명에 대한 정의 및 연계 내용이 상이할 경우 WCO에서 공표하는 품목분류 연계표가 우선하여 적용됨

● 향후 FTA 상대국과의 협의 후 HS201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FTA 협정 및 법령 개정과 함께 공표할 예정입니다.

※ 연계표 상세내용은 지면관계상 앞서 소개한 공지사항 검색방법에 따라 직접 확인

I

II

III

IV

V



참고 6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관련 공문

Hi! 청렴, Bravo! 관세청



관 세 청



수신자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질의 답변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질의하신 물품은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Overleaf Note)"에 따라 "CTC + Specific Process"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ASEAN FTA 발효이후 상당한 기간 'Specific Processes' 로 표기한 것을 명시하여 인정하여 온 바, 향후 체결당사자간 합의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이 표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 세 청 장

관세행정관

행정사무관

자유무역협정이행팀 04/05
행정팀장

협조자

시행 자유무역협정이행팀
-1478

접수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2동 정부대전청사 2동 13층
전화 042-481- 전송 0 /

/ www.customs.go.kr

@customs.go.kr / 대국민공개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ashed lines.

- I
- II
- III**
- IV
- V

▶▶ <http://fta.customs.go.kr>

IV

기타 협정

1. C/O 불안정
2. C/O 발급애로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기타 협정 참고자료)





1

C/O

불인정



C/O 발급애로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기타 협정 참고자료

1. 미등록 서명을 이유로 C/O 불인정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인도 CEPA (인도)



○ 애로 원인

- 인도세관에서 우리측에서 발행한 C/O에 기존에 통보되지 않은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 우리측은 인도 세관에 이미 해당 인장·서명을 전달하였으나 인도내부 사정으로 산하세관까지 전달되지 않음
- 우리나라 세관의 허가증 또는 공식전문 발송을 통한 확인 요구

○ 문제 해결

- 수입자에게 인도 관세청 서명관리 담당자를 통보, 확인토록 안내하였으나 캘커타 세관 담당자가 상부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거부
- 인도 관세청 컨택포인트를 통해 인도측에 통보했던 인장·서명 목록 및 해당 서명이 권한있는 담당자의 서명임을 확인하는 공식 전문 발송·효력 인정

I

II

III

IV

V

2. 자율발급 C/O 불인정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페루 FTA (페루)



▶ 애로 원인

- 한-페루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자율발급 C/O를 페루측에 제공하였으나, 페루측에서 불인정
 - 당시 인증수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 영문포탈 인증번호 검색결과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영문 인증서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측에 영문 인증서 양식이 없어 제출 불가능
 - ※ 한-페루 FTA는 발효후 5년 기간 동안 “기관발급”이 원칙이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의 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발급” 허용

▶ 문제 해결

- 부산세관에 한-페루 FTA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 페루 세관에 제출하여 해결
- 관세청 영문포탈상 인증번호 검색시스템 개선 · 수정

▶ 인증번호 유효성 확인방법

- 관세청 영문홈페이지(<http://english.customs.go.kr>) > Information Plaza > Approved Exporter에 접속
- 공란에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Check it out”을 클릭하면 해당 번호의 유효성 및 지정일자 안내

3. C/O상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관련

· 협정명 및 상대국 : APTA (중국)



○ 애로 원인

- 중국에서 B40%로 기재된 APTA C/O를 발급하였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여 협정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관세사측에서 언급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 고시 별표 제3-1(특혜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표)을 오해
- 중국 수출자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수정하여 재발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답변

○ 문제 해결

- APTA 협정문상 “B”가 기재되고 뒤에 55%이하이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협정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 “B”는 협정문 제3조 규정(불완전생산 또는 획득 물품)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한 제품에 대해 기재
 - 비원산지재료 비중이 FOB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O 작성요령에 따르면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 비중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C/O의 “B”뒤에 기재되어 있는 45%는 비원산지 재료 비중으로 5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
- 해당 C/O를 세관에 제출하여 APTA 협정세율을 적용

… 참고자료 : 1. APTA 협정문 중 관련규정 발췌(참고1)

2.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참고2)

3.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 고시 별표 3의1(참고3)

I

II

III

IV

V

2

C/O

발급어로



● C/O 불인정

●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 기타 협정 참고자료

1. 인증수출자에 대한 상의 C/O 증빙서류 제출 요구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인도 CEPA (인도)



○ 애로 원인

- 상공회의소에 한-인도 CEPA C/O 발급 신청시 인증수출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신청건마다 증빙 서류 제공 요구
 - 상공회의소 확인 결과,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할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내부지침 운영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C/O 발급신청시 인증수출자는 발급신청서외 첨부 서류 생략 가능
 - 일부 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매 건에 대해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문제 해결

- 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자와 협의, 내부지침 수정
 - 대한 상의 명의로 인증수출자에 대한 첨부서류 제출 생략토록 전국 상의에 하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하략)

I

II

III

IV

V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 — C/O 불안정

● — C/O 발급예로

● — 기타 협정 참고자료

1.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통관 지연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인도 CEPA (인도)



○ 애로 원인

- 수입국에서 수출품목(밸브제어장치)에 대해 C/O 발급을 요구하나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해 발급에 어려움
 - 기존 수출시 8481.90호(밸브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신고하였으나 인도측에서는 8481.20호(공기압 전송용 밸브)로 분류

○ 문제 해결

- 동 품목에 대한 정확한 품목번호 검토결과, 인도측에서 분류한 품목번호(8481.20호)가 정확한 것으로 확인
 - 동 수출업체에서 인천세관에 품목분류를 질의, 8481.20호로 품목번호 결정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
 - 회사 내부의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달받지 못하여 기존 품목번호(8481.90호)로 수출신고하였음
- 기존에 8481.90호로 수출신고된 건 및 발급된 C/O를 모두 정정하는 한편, 품목별 인증 수출자도 지정받음

I

II

III

IV

V



기타 협정 참고자료



C/O 불인정

C/O 발급예로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참고 1

APTA 협정문 중 관련 규정 발췌

제1조 (원산품)

협정 체제내 특혜무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제5조의 범위내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나. 당해 상품이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 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제3조 (불완전생산 및 획득 물품)

가. 제1조 나호의 규정에 따라,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치가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영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행해진 상품은 제3조 (다)항, (라)항 그리고 (마)항을 조건으로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나. 분야별 합의

다. 비원산지 원료의 함유량 계산공식과 제3조 (가)항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 + \text{원산지 미상의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text{본선인도가가격}} \times 100 \leq 55\%$$

라. 비원산지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원료, 부품, 제품의 수입시 입증 가능한 운임보험료 포함가액
2. 제조, 가공이 발생한 참가국의 영역내에서 지불된 확인 가능한 원산지 미상의 원료, 부품, 제품의 최초가액

I

II

III

IV

V

**참고 2****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Issued in.....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I.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상품은 다음 각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 목적지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의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해야 한다.
- 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탁송품내의 개별상품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II. “란” 기재방법

• 1란 : 수출자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

• 2란 :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다.

• 3란 : 공용란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해 공란으로 남겨둔다.

•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By Air(비행기로)” 또는 “By sea(선박으로)”로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By Air(비행기로)”, “Laos to India via bangkok (방콕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를 표기한다.

• 5란 : 세번

개별품목의 HS 4단위를 표기한다.

•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상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상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 **8란 : 원산지 기준**

특혜 상품은 아시아-무역협정 제2조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지 않은 상품은 제3조 또는 제4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8란에 "A"를 기재한다.

나.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8란에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를 기재한다. "B" 뒤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추가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B" 50%)
2.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를 기입한다. "C" 뒤에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C" 60%)
3.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8란에 "D"를 기입한다.

• **9란 :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원산지 증명서 상의 상품의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갯수, Kg 등)을 기입한다.

•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송인일자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 **11란 :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인 선적자를 의미한다. 생산국명·수입국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한다. 이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 **12란 : 증명**

증명기관이 이란에 증명한다.

**참고 3****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 고시 별표 3의1****특혜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표**

	완전생산 기준	부가가치 기준 (타국산 공제)	부가가치 기준 (누적가격)	최빈국 특혜 적용비율 초과	HS 변경기준 (수입품+S)	가공공정 기준 (가공공정)
	(A)	(B)	(C)	(D)	(W)	(S)
최빈국 특혜 (관세법 제76조)	A	B 50%이상				
GSTP	A	B 50%이상	C 60%이상	D (40%이상)		
APTA	A	<u>B</u> 45%이상	C 60%이상	D (35%이상)		
GATT-TNDC	P	Y 50%이상			(X 8405)	
GSP (캐나다)	P		F 60%이상	G (35%이상)		
GSP (노르웨이)	P				W 9618	
GSP(러시아 연방)	P	Y 50%이상	Pk			
GSP (뉴질랜드)	P	Y 50%이상				S

- I
- II
- III
- IV**
- V

▶▶ <http://fta.customs.go.kr>

—
해외 FTA 활용애로 해결 사례집
—



FTA 주요 지침

해외 FTA 활용애로 신고 방법 및 연락처 안내



지침

1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유의사항 시달

(공정무역과-953, 2004. 4. 1)

1. 2004. 4. 1부로 시행되는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는 수출자가 양국의 합의된 양식으로 작성·서명하는 자율발급제도이며 수출자에 대하여 세관의 원산지검증 협력 의무, 자료보관 의무(5년) 및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정 대상 등 자율에 따른 책임을 부여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작성 수출자는 반드시 칠레에 거주하고 칠레당국의 고유납세번호 (Rol Unico Tributario)를 부여받은 수출자이어야 하므로 제3국에 거주하는 수입계약 서상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송품장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10번 항목(Remarks)에 송품장 작성자의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세관장은 통관심사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고유납세번호 기재 유무 및 주소를 확인하여 제3국 거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통관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4. 4.1일 시행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거나 고시에서 정한 양식과 상이한 증명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2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에 인정처리 지침

(공정무역과-691, 2007. 2. 27)

리히텐슈타인이 원산지인 물품의 경우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Liechtenstein” 또는 “L”로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대한 지침시달

(FTA이행팀-1164, 2011. 6. 27)

1. 「한-아세안 FTA 부록 I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제4항 및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2항과 관련입니다.
2.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Soon thereafter)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제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시('09.10, 서울) 수출직후(Soon thereafter)라 함은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합의한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이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일이내라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없이 발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취하제도 시행 지침 시달

(FTA집행기획담당관-1169, 2011. 6. 28)

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이후 신청인이 중복신청 등 업무미숙에 의한 신청 오류로 발급신청 취하를 원하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신청' 제도를 2011.7.1(금)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2. 각 발급기관장께서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인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상공회의소장께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시스템 개선전까지는 서류신청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1부. 끝.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발급신청번호		발급신청일자	
②신청인	구 분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기타 ()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비해당 []해당 [인증번호 :]		
④ 적용FTA협정	한-_____ FTA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⑦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⑧취하 신청 일자

⑨취하 신청 사유

위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세관장(○ ○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1169, 2011. 6. 28)

이 지침에서 '한-EU FTA'는 '협정'이라 하고, '한-EU FTA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FTA특례법'이라 함

1. 한-EU FTA 협정 집행 일반 사항

1.1.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조 정의

※ EU 각 국가통화의 6,000유로 해당금액은 별도 게시(공문시행 및 FTA포탈 게시 예정)

- 그 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를 적용

1.2.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등 의정서 부속서 2(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다른 원산지 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수출쿼터가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됨

▶ 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는 부속서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Derogation – Annex II(a) of Protocol...”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 부속서 3

1.3.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이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원본서명 생략 가능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5항

2.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

2.1.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 ①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협정관세적용신청)한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 *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도 적용 가능

※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2개월임에 유의

- 사후신청 가능기간 기산일이 협정과 FTA특례법과 다름
- [협정]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내에 원산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특례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사후신청 가능
 - ☞ 경과규정 대상물품을 협정발효일 이후에 수입통관한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만 유효

(예) 보세구역반입일 2011.6.27 발효일 2011.7.1 수입신고수리일 2011.7.15 인 경우 : 2012.6.30까지 세관에 접수된 증빙서류(원산지신고서 등)만 유효

②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적용 가능

- 단,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소급작성 권한 있음

※ 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 원산지신고서는 발효일 이후에 소급발행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효일 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원산지신고서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예)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 발행,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 추가 발행 등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 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①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

-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

② 협정당사국 이외의 지역(역외 영역)을 경유하는 경우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되는 경우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

하지만 이 경우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제1조 정의(탁송화물), FTA특례법 제9조 제2항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①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의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만 유효

*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행 가능

-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EU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적용 가능

②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 가능

※ (예)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가 영국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 가능

③ 원산지신고서 사본인정 여부

▶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입신고시 상업서류의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FTA특례고시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 하지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FTA특례고시 제3-3-2조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① 단일탁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원산지 제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행 가능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음

②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 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 불가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③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언어별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수출국가가 반드시 자국언어로 표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협정 적용 가능

※ (예) 프랑스 수출자가 영어 신고문안을 사용하여도 적용 가능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④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EU역내 다수인 경우의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가 EU역내 여러 국가인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면 적용 가능

⑤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의 원산지신고서

-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2.6.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 [붙임 1]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

①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표기 및 'EC'표기는 인정

*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EECE,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EU, EC 표기는 인정

* 협정문에 없는 당사자명은 인정 불가

② 안도라 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HS 25류~97류)과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도 인정

* 안도라공국 : ANDORRA (ISO 코드 : AD)

산마리노공화국 : SAN MARINO (ISO 코드 : SM)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공동선언

③ '유럽연합당사자(EU)'에는 세우타 및 멜리아 (Ceuta and Melill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아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EU'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불가

- 이 경우 'Ceuta and Melilla'표기도 인정불가, 'CM'표기만 인정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

* [붙임 2]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

- ▶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
 - 관련자료 심사 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검증실시

28.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

- ①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
- ②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신고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

※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동안 유효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일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는 기간계산에서 제외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8조 제1항,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29.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붙임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 ① 선착순방식 관세율할당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 ※ [품명] 넙치(0303-39-0000), [이행1년차 In-Quota 수량] 800M/T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제출 대상으로 운영
 - ※ 동 물품의 수입통관 집행에 관한 내용은 별도 지침 참조[별도지침1]

- ②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 (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전산용)'는 Single-Window 시스템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참조] 한-EU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10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관련 사항

* [붙임 4]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참조

-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유럽 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시행되지만,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외됨
 - ※ 동일 계약상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운송중에 있지 않은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 특별긴급관세조치 시행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조치시행일에 FTA포탈 등에 해당사실 게시)
 - 운송서류 등을 통해 출항일을 확인하여 조치시행일 이후에 운송되기 시작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

[참조] 한-EU FTA 제3.6조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2.1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확인 관련 사항

- ▶ 원산지가 EU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원산지란에 'EU'로 입력 (※ 통관시스템 반영시 별도 통보)
- ▶ '원산지'가 EU당사국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필수입력항목으로 변경

I

II

III

IV

V

3. 수출물품 통관관련 사항

3.1. 수출신고서식 개정 사항 확인

- 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발급여부(수출신고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사)를 표시하도록 수출신고서 개정
 - E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신고서는 '자율발급' 표기 여부 확인

끝

[별도지침]

➔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품목 집행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에서 선착순방식으로 운영하는 물품에 대한 집행절차를 규정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선착순 방식 관세율 할당물품의 통관절차)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한다.

• 제4조(한도수량 도달일의 잔여수량배분)

- ①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제1항의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

• 제5조(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통관지세관장은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 이자는 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잔여수량의 게시)

제4조에 따른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홈페이지(FTA포탈) 등을 통해 게시한다.



[붙임 1]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구분	당사자 명	ISO 코드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w	KR	
	THE KINGDOM OF BELGIUM	BE	
유럽연합	THE REPUBLIC OF BULGARIA	BG	
	THE CZECH REPUBLIC	CZ	
	THE KINGDOM OF DENMARK	DK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	
	THE REPUBLIC OF ESTONIA	EE	
	IRELAND	IE	
	THE HELLENIC REPUBLIC	GR	
	THE KINGDOM OF SPAIN	ES	
	THE FRENCH REPUBLIC	FR	
	THE ITALIAN REPUBLIC	IT	
	THE REPUBLIC OF CYPRUS	CY	
	THE REPUBLIC OF LATVIA	LV	
	THE REPUBLIC OF LITHUANIA	LT	
	THE GRAND DUCHY OF LUXEMBURG	LU	
	THE REPUBLIC OF HUNGARY	HU	
	MALTA	MT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NL	
	THE REPUBLIC OF AUSTRIA	AT	
	THE REPUBLIC OF POLAND	PL	
	THE PORTUGUESE REPUBLIC	PT	
	ROMANIA	RO	
	THE REPUBLIC OF SLOVENIA	SI	
	THE SLOVAK REPUBLIC	SK	
	THE REPUBLIC OF FINLAND	FI	
	THE KINGDOM OF SWEDEN	S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B	
		THE EUROPEAN UNION	

※ 안도라공국(ANDORRA, AD), 산마리노공화국(SAN MARINO, SM)

※ 세우타 및 멜리아(Ceuta and Melilla, CM)





[붙임 2]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 세관번호 (/)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 '/'가 예시에 사용된 경우 코드의 일부로 인정

국 가 명	인증코드 예시	인증코드 체계	비 고
벨기에(Belgium)	BE 74	국가(2)/인증번호(1~4)	
불가리아(Bulgaria)	BG/1223/009/08	국가(2)/세관부호(4)/일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ech Republic)	CZ/02/0001/04	국가(2)/세관부호(01~08)/인증번호(4)/연도(2)	
덴마크(Denmark)	DK/51/04/237/00638 DK/04/000638	국가(2)/세관부호(2)/연도(2)/237/인증번호(5) 국가(2)/연도(2)/인증번호(6)	※ 2가지 형식 모두 유효
독일(Germany)	DE/4711/EA/0007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	
에스토니아(Estonia)	EE/001/2001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4)	
아일랜드(Ireland)	IE/05/06	국가(2)/인증번호(2)/인증연도(2)	※ 자릿수 변경
그리스(Greece)	GR/01/1234/2004	국가(2)/세관부호(1~10)/인증번호(4)/인증연도(4)	
스페인(Spain)	ES/28/0001/98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프랑스(France)	FR 003160/0025	국가(2)/세관부호(6)/인증번호(4)	
이탈리아(Italy)	IT/001/RM/06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인증연도(2)	
사이프러스(Cyprus)	CY/NIC/000	국가(2)/세관부서명(3)/일련번호(3)	
라트비아(Latvia)	LV/100/2006	국가(2)/인증번호(1~3)/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ithuania)	LT/VM0/011	국가(2)/세관관서명(대문자2+digit number(1))/인증번호(3)	※ 세관관서명 변경
룩셈부르크(Luxembourg)	LU/ORDL/256	국가(2)/ORDL/인증번호(1~500)또는(501~999) (ORDL : Origine, Direction des Douanes et Accises)	1 - 500 이하 : national 501-999 : single
헝가리(Hungary)	HU12345N8000000000	국가(2)/세관부호(5)/0/level코드(N or E) /8(마지막연도)/인증번호(9)	N : National E : EU Community
말타(Malta)	MT/D/000	국가(2)/D(Dwana)/인증번호(3)	
네덜란드(Netherlands)	NL/361/02/1234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	
오스트리아(Austria)	AT/100/015	국가(2)/세관부호(3)/인증번호(3)	
폴란드(Poland)	PL/042010/0001	국가(2)/세관관서(6)/인증번호(4)	
포르투갈(Portugal)	PT/000/P	국가(2)/인증번호(3)/인증지역번호(P or L)	P : Porto, L : Lisboa
루마니아(Romania)	RO/DRBV/025	국가(2)/세관관서명(5, 대문자)/인증번호(3)	
슬로베니아(Slovenia)	SI/123/03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SK/1050/010/05	국가(2)/세관관서(4)/인증번호(3)/인증연도(2)	
핀란드(Finland)	FI/50/110 *FI/8/36	국가(2)/인증번호/지역세관번호(3) * 국가(2)/인증번호/Å land지역은 2자리	
스웨덴(Sweden)	SE/SHF/0000001	국가(2)/세관관서(3, 대문자)/인증번호(6) (MO지역은 세관관서번호가 2자리로 사용됨)	
영국(United Kingdom)	GB 12345/06	국가(2)/인증번호(5)/인증연도(2)	



[붙임 3]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s)품목

품 목	HS 번호	최천년도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운영방식	
1	넙치(기타)	0303-39-0000	800	-	선착순
2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1,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구매
	전지분유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2	연유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3	식용 유장	0404-10-1019 0404-10-1099 0404-10-2119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3,350톤	한국유가공 협회
4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35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구매
5	치즈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4,56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 배분
		6			
7	오렌지	0805-10-0000	2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구매
8	맥주맥, 맥아	1003-00-1000 1107-10-0000	10,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9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45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 배분
10	보조사료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00	5,5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수입권 배분
		11		덱스트린	

[참조] 한-EU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



한-EU FTA 집행에 관한 수정분
(FTA집행기획담당관-1170, 2011. 6. 28)

1.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64(2011.6.27)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집행 지침 내용 중 협정에서 정한 경과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수정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① (기재생략) ②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적용 가능 - 단,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소급작성 권한 있음 ※ 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적용 가능 - 경과규정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할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적용 가능 ※ 경과규정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협정발효일의 다음날부터 운송한 물품)에는 동 지침 2.4조 ①항을 적용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신설)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①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①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 ③ (기재생략)	② (현행 ①항과 같음) 조항 변경 ③ (현행 ②항과 같음) 조항 변경 ④ (현행 ③항과 같음) 조항 변경

한-EU FTA 원산지표기 및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1668, 2011.7.12)

1.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는 원산지표기 확인업무 처리

▶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현행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GREECE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IT
- 'EU'표기, 'EC'표기

• 추가 인정범위

- 'European Community'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 ※ (예)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말타 : 'UE'표기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ES'표기
 - 그리스 : 'EE'표기
 - 불가리아 : 'EC'표기

※ 한-EU FTA 적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입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9조), 수출입 통관업무 집행시 확인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된 경우 번역본을 제출받아 확인 처리

2. 인증수출자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지침* 내용과 상이한 경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집행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70호, 2011.6.28)

- ① 수입통관부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확인
 - 확인결과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 인증수출자 번호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금지
- ② 수입자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결과 한-EU FTA에 적용되는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우선 협정관세 적용통관 후 사후검증 절차 진행
 - ※ 상기 견에 대하여는 先 통관 후 검증실시 대상임을 수입자에게 안내
- ③ 인증번호체계가 지침내용과 다른 경우(상기 ①·②항) 수입통관부서는 본부세관 FTA 원산지 검증업무 담당부서에 보고
 - ※ 매주 금요일에 본부세관 FTA과로 취합보고(주단위 보고, 붙임서식)
- ④ 본부세관 FTA업무부서는 인증수출자 확인 여부를 자체심사
 -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요구
 - ※ 자체심사 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필요시 연장가능)
 - 심사기간내에 유효한 인증수출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종료
 - ※ 심사종료 후 본청 원산지지원과로 사후보고
 - 그 외의 경우 본청 원산지지원과로 보고
- ⑤ 본청 원산지지원과는 유효한 인증수출자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 원산지검증실시

3. 시행일 : 공문 발송일부터 시행



[붙임 2]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 ‘/’가 예시에 사용된 경우 코드의 일부로 인정

국 가 명	인증코드 예시	인증코드 체계	비 고
벨기에(Belgium)	BE 74	국가(2)/인증번호(1~4)	
불가리아(Bulgaria)	BG/1223/009/08	국가(2)/세관부호(4)/일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ech Republic)	CZ/02/0001/04	국가(2)/세관부호(01~08)/인증번호(4)/연도(2)	
덴마크(Denmark)	DK/51/04/237/00638 DK/04/000638	국가(2)/세관부호(2)/연도(2)/237/인증번호(5) 국가(2)/연도(2)/인증번호(6)	※ 2가지 형식 모두 유효
독일(Germany)	DE/4711/EA/0007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	
에스토니아(Estonia)	EE/001/2001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4)	
아일랜드(Ireland)	IE/05/06	국가(2)/인증번호(2)/인증연도(2)	※ 자릿수 변경
그리스(Greece)	GR/01/1234/2004	국가(2)/세관부호(1~10)/인증번호(4)/인증연도(4)	
스페인(Spain)	ES/28/0001/98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프랑스(France)	FR 003160/0025	국가(2)/세관부호(6)/인증번호(4)	
이탈리아(Italy)	IT/001/RM/06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인증연도(2)	
사이프러스(Cyprus)	CY/NIC/000	국가(2)/세관부서명(3)/일련번호(3)	
라트비아(Latvia)	LV/100/2006	국가(2)/인증번호(1~3)/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ithuania)	LT/VMO/011	국가(2)/세관관서명(대문자2)/digit number(1)/인증번호(3)	※ 세관관서명 변경
룩셈부르크(Luxembourg)	LU/ORDL/256	국가(2)/ORDL/인증번호(1~500)또는(501~999) (ORDL : Origine, Direction des Douanes et Accises)	1 - 5 0 0 이하 : national 501-999 : single
헝가리(Hungary)	HU12345N8000000000	국가(2)/세관부호(5)/0/level코드(N or E) /8(마지막연도)/인증번호(9)	N : National E : EU Community
말타(Malta)	MT/D/000	국가(2)/D(Dwana)/인증번호(3)	
네덜란드(Netherlands)	NL/361/02/1234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	
오스트리아(Austria)	AT/100/015	국가(2)/세관부호(3)/인증번호(3)	
폴란드(Poland)	PL/042010/0001	국가(2)/세관관서(6)/인증번호(4)	
포르투갈(Portugal)	PT/000/P	국가(2)/인증번호(3)/인증지역번호(P or L)	P : Porto, L : Lisboa
루마니아(Romania)	RO/DRVBV/025	국가(2)/세관관서명(5, 대문자)/인증번호(3)	
슬로베니아(Slovenia)	SI/123/03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SK/1050/010/05	국가(2)/세관관서(4)/인증번호(3)/인증연도(2)	
핀란드(Finland)	FI/50/110 *FI/8/36	국가(2)/인증번호/지역세관번호(3) *국가(2)/인증번호 / Å land지역은2자리	
스웨덴(Sweden)	SE/SHF/0000001	국가(2)/세관관서(3, 대문자)/인증번호(6) (MO지역은 세관관서번호가 2자리로 사용됨)	
영국(United Kingdom)	GB 12345/06	국가(2)/인증번호(5)/인증연도(2)	

I

II

III

IV

V

한-EU FTA 집행에 관한 수정분
(FTA집행기획담당관-1170, 2011. 6. 28)

1.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70('11.6.28)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집행 지침 내용 중 원산지 신고서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한-EU FTA 수석대표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세관장께서는 상기 내용을 관내 수입자와 수입신고인 등에게 안내하시고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수	정
<p>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p> <p>①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p> <p>②~④ 기재생략</p>	<p>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p> <p>① <u>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해당 원산지 신고서도 유효</u></p> <p>※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p> <p>②~④ (현행과 같음)</p>		

한-EU FTA 독일 인증수출자번호 상이사례 처리 지침 시달
 (원산지지원담당관-1681, 2011.11.2)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70(11.6.28)호와 관련입니다.
2. 한-EU FTA 특혜적용이 가능한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독일 관세당국의 답변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각 세관에서는 기 통관한 인증수출자번호 상이사례 및 독일에서 특혜 수입 신청하는 물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처리지침을 수립·시달하오니 차질 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사용목적
① DE/ 0000/ EA/ 0000 〈국가/세관부호(4)/EA/인증번호(4)〉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② DE/ 0000/ ZA/ 0000 〈국가/세관부호(4)/ZA/인증번호(4)〉	전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인증번호 ※ FTA와 관련 없음
③ DE/ 0000000 〈국가/ 일련번호(7)〉	단순 세관 등록번호 (1년에 3건 이상 수출실적 있는 업체에 부여)

한-미 FTA 운영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1073, 2012.3.1.2)

이 지침에서 '한-미 FTA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라고 지칭함

※ 동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행함 (본 책자는 활용애로와 관련된 내용만 일부 발취함)

I. 한-미 FTA 일반 사항

▶ 1. 협정적용 영역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미합중국

지 역	원산지부호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US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PR

※ 괄, 사이판 등 그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적용 대상이 아님



※ 협정문 제1.4조(정의)

▶ 2. 원산지 증명방식 : 자율발급

-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하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항 가호 ※ 협정문 제6.19조(수입관련 의무) 4항 아호

- [발급 형식] 서면 또는 전자증명

■ 원산지증명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 권고서식(붙임), 또는,
-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서류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협정문에서 정한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를 기재하여도 적용 가능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 가능

※ 항목별 설명

①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 - ‘성명’이외의 동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되어 연락가능한 정보(예: E-mail, 전화번호)를 기재
③~④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 ‘수출자’와 ‘생산자’중 하나의 항목은 반드시 기재
⑤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⑥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이 동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 (예시)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⑦항 관련	•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⑧항 관련	• "원산지포괄증명"이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 3. HS2012 도입에 따른 작성방법

- [필요성] 제5차 HS협약 개정안(HS2012)이 '12.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한-미 FTA는 'HS2002' 기준으로 협상 타결

- HS2012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양국 세관당국간에 협의중에 있으며,
- 그 전에는 임시로 "연계표(HS2012 ↔ HS2002)"를 참고하여 적용

※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에서 시달

- [관련법령] FTA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령 : 특혜세율(양허표) 규정 (HS2012기준)
- 시행규칙 :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HS2002기준)
- ⇨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연계표 활용 필요

※ 현재 개발도 FTA(EU 등)도 "연계표(HS2012 ↔ HS2007)"로 운영 중
- 관세율(HS2012기준), 원산지결정기준(HS2007기준)

- [HS품목번호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수입신고서,수출입신고서 기재방법

서 류 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2
수출입신고서	HS2012

▶ 4. 원산지 증명의 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②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

음

※ 협정문 제6.16조(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 5.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라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함*

음

※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 특례법 시행령 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5항

▶ 6.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 따라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도 적용 가능
- * [예] (선적일) 2012.1.15일, (C/O작성일) 2012.1.30일 → 유효
-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I

II

III

IV

V

▶ 7. 협정발효 적용시점 (경과규정)

■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년 3월 15일)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개정 FTA특례법시행령 부칙(제23336호) 제2조(일반적적용례)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4년이므로,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항도착일로부터 4년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까지 적용대상

(예) 수입항도착일 : 2012.3.15일 [2008.3.16일 이후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

■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년 3월 15일) 미국 세관당국에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II. 수입자 관련 사항

▶ 8. 운송원칙 (제3국 통과 및 환적 물품)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 한-미 FTA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① 비당사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 ②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현행 특례고시 제3-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협정문 제6.13조 통과 및 환적

▶ 9.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 [붙임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참조

-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FTA특레고시 제3-3-2조(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준용

급

※ 협정문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시 (FTA특레고시 별지 제9호 서식)

◎번란(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정확하게 표시

*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신고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FTA특레고시 별표6에 따른 원본임을 확인하는 서명이 있는 사본 제출도 가능

[참고] FTA특레고시 [별표 6]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000 서명

▶ 10.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및 세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를 제시해야 함

※ 동 협정에서는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급

※ 협정문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5항

I

II

III

IV

V

▶ 11. 수입자의 자료보관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12.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붙임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① [선착순방식 TRQ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품 명	1년차 적용물량(M/T)
넙치 (0303-34-0000, 0303-39-0000)	1,530
명태 (0303-67-0000, 0303-69-9000)	4,000
민어 (0303-89-9091)	1,000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확인하여 동일 수량인지 확인할 것

- 운영방법은 한-EU FTA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품목 방식과 같음
(※ FTA 특레고시 제5장으로 신설 예정)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 (대한민국)에서 선착순방식으로 운영하는 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 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가산이자 는 없음(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 · 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② [수입권 추천* 방식 TRQ 품목]

- *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유가공협회 등 총7개 대행기관
 - ※ [주의사항]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에서 정하는 물량을 추천기간에서 추천 받아야 함
 - (주의) WTO 일반특혜C/O로 F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전산용)’는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확인 시스템’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참조] 한-미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나-1(대한민국),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1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ASG)* 관련 사항

* ASG : Agricultural Safeguard

* [붙임 4]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참조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① [선착순방식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 초과물량은 ASG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가. 유형1: [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 초과] ASG

나. 유형2: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다. 유형3:

• 이행 1~4년차	[중간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주 기준물량 이하] 중간특별긴급관세율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 이행 5년차 이후	[주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라. 유형4: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물량] 무관세

[기준물량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초과] ASG

- 운영방법 : 선착순방식 TRQ품목 운영방법과 같음

② [관세율할당 품목과 결합된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협정에서 정한 기준물량은 추천에 의한 할당관세율을 적용, 기준물량 초과물량은 ASG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마. 유형5: [기준물량이하] TRQ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참고] 한-미 FTA 제3.3조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 유형별 대상품목

• 유형1

⊕ [기준물량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 초과] ASG

쇠고기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돼지고기	0203.19.1000, 0203.19.9000
양파	0703.10.1000, 0712.20.0000
마늘	0703.20.1000, 0703.20.9000, 0711.90.1000, 0712.90.1000
고추	0709.60.1000, 0709.60.9000, 0711.90.5091, 0904.21.0000, 0904.22.0000
사과	0808.10.0000
녹차	0902.10.0000, 0902.20.0000
생강	0910.11.1000, 0910.12.1000, 0910.11.2000, 0910.12.2000, 0910.11.9000, 0910.12.9000
낙화생	1202.30.1000, 1202.41.0000, 1202.30.2000, 1202.42.0000
참깨	1207.40.0000
인삼	1211.20.1110, 1211.20.1190, 1211.20.1210, 1211.20.1290, 1211.20.1310, 1211.20.1390,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211.20.9100, 1211.20.9200, 1211.20.9900, 1302.19.1210, 1302.19.1220, 1302.19.1290
참기름	1515.50.0000
설탕	1701.91.0000, 1701.99.0000

• 유형2

⊕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기타 뿌리 및 괴경류	0714.30.9000, 0714.40.9000, 0714.50.9000, 0714.90.9090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1105.10.0000, 1105.20.0000



• 유형5

① [기준물량 이하] TRQ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맥아 및 맥주맥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보리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옥수수 전분	1108.12.1000, 1108.12.9000
덱스트린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 참고자료

《한-미 FTA 관세율 구분부호》

FUS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수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US2	
FUS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US1을 제외하고 높은 순으로 FUS2, FUS3, FUS4를 순차적으로 부여
FUS4	
FUS5	-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 내의 물품
FUS6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US7	- 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 중 중간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FUS8	- 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 중 주기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 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 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1단계 발동품목)
FUS9	- 향후 적용될 새로운 관세율 등록을 위한 잔여부호

- I
- II
- III
- IV
- V

《TRQ, ASG품목 관세율 구분부호》

• TRQ 선착순방식

물량	관세율부호
최초물량~무관세물량	FUS 5
무관세물량 초과물량	FUS 1

• TRQ 수입권 추천방식

물량	관세율부호
추천물량	FUS 6
그 밖의 물량	FUS 1

• ASG 유형1

물량	관세율부호
[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	FUS 1~4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ASG 유형2

물량	관세율부호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FUS 2~4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ASG 유형3

⦿ 이행 1~4년차

물량	관세율부호
[중간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FUS 3~4
[주 기준물량 이하]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FUS 7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이행 5년차 이후

물량	관세율부호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FUS 2~4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ASG 유형4

물량	관세율부호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물량] 무관세	FUS 5
[기준물량이하] 협정관세율	FUS 1~4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ASG 유형5

물량	관세율부호
[기준물량 이하] TRQ무관세	FUS 6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14. 계절관세 적용품목의 수입통관

▶ 한-미 FTA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오렌지, 포도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한-미 FTA 계절관세 품목》

HS No	품 명	적용 기간 (2012년도)	
		관세율	적용 조건
0701.90-0000	감자(신선, 냉장한 것) - 칩용	0	1월~4월, 12월 수입되는 물품
		304	5월~11월 수입되는 물품
0805.10-0000	오렌지	0	1월~2월, 9월~12월 수입되는 물품 중 2,500메트릭톤 이하의 물품
		50	1월~2월, 9월~12월 수입되는 물품 중 2,5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물품
		30	3월~8월 수입되는 물품
0806.10-0000	포도 (신선한 것)	24	1월~4월, 10/16일~12월 수입되는 물품
		42.3	5월~10/15일 수입되는 물품

Ⅲ. 수출자 관련 사항

▶ 15. 수출자의 자료보관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서류보관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붙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16. 생산자의 자료보관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17. 원산지증빙서류 허위 발급시 처벌조항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FTA특례법 제22조제2항)
-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수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FTA특례법 제22조제3항)

▶ 18. '국내제조확인서' 관련 사항

-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붙임 5] 참고)
- (목적) 생산공정의 역내 누적을 입증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
- (효과) 생산공정 누적규정*을 활용하면 '비역내산 원재료인 원면을 사용한 면직물도 FTA 특혜적용 가능'
 - * 물품이 역내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 협정문 제6.5조(누적))

▶ 생산자 국내제조확인서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공정	브라질산 원면 (HS 5201)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	미국에 수출
원산지 결정 기준		CC*	CTH**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	
① 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브라질산	브라질산	원산지 미충족	특혜수출 不可
②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브라질산	원산지 충족(CTH기준, 5201→5208)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		특혜수출 可能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됨

① A사가 만든 면사 : 브라질산 (5201→5205로 2단위가 변경되지 않음)

B사가 만든 면직물 : 브라질산 (5205→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으나 5205호에서의 변경이므로 불인정)

② A사가 만든 면직물 : 한국산 (5201→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고 5205호에서의 변경이 아님)

- I
- II
- III
- IV
- V**

IV. 한-미 FTA 원산지 검증

▶ 19. 일반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 직접검증

(1) 수입당사국의 직접검증 방법 (한-미 FTA 제6.18조 제1항)

-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질의
-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기록(협정 제6.17조제1항에 언급된 기록) 검토 또는 상품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2) 직접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한-미 FTA 제6.18조 제2항 · 제4항 · 제6항)
-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향후 양 세관당국간에 협의할 예정)

(2) 직접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한-미 FTA 제6.18조 제2항·제4항·제6항)

- (특혜관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입증하는 정보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수입당사국의 사업장 방문에 수출자·생산자가 기록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당사국이 적발한 경우
 - 수입자가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특혜관세 적용중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허위·근거 없는 신고·증명이 적발된 경우, 원산지를 준수하고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진술·신고·증명되는 동일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적용 중지가능
 - *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
- (수입자 처벌예외)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 처벌불가
 - 수입자가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 수입자가 신청이 유효하지 아니함을 인지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 (수출자 등 처벌예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공받은 모든인에게 증명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통보한 경우 부정확한 증명을 이유로 벌칙 부과 불가

▶ 20. 섬유·의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

(1) 수출당사국에 의한 간접검증

- 수출당사국에 수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검증 요청(한-미 FTA 제4.3조 제3항)

- 수출당사국은 수입당사국에서 원산지가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증을 수행
- 수출당사국은 해당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검증수행 가능
- 수출당사국은 자체적인 발의에 의해서도 검증 수행 가능
- 수출당사국에 수출자·생산자·운송인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
 - 수입당사국은 수출국내에 섬유·의류무역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수출당사국에 검증 요청
 - ※ 한-미 FTA 제4.3조 제5항
 - 수출당사국은 수입당사국에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증을 수행
 - 검증대상자가 섬유·의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통관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
 - 검증대상자가 수출 생산한 섬유·의류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
 - 합리적 의심(resonable suspicion): 다음 사실정보 및 요소에 기초한 원산지 위반 의심

- 섬유·의류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통관조치에 대한 기업의 우회
 - 섬유·의류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제협정에 관한 조치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또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달리 용이하게 할 행위의 존재

㉠

 - 수출입자가 수입을 규율하는 법 등의 위반전력
 - 제조자·생산자 또는 운송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법 등의 위반전력
 - 특정제품 분야에서 상품의 운반에 관여한 일부 또는 모든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등의 위반전력
 - 기타 양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정보

(2)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의 공동 현지검증 (한-미 FTA 제4.3조제6항)

-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이 공동으로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를 공동 검증
 - 수입당사국은 수출자·생산자 등에게 사전통보 불허
- 방문 시점에 현장방문 동의요청, 동의 불허시 협정관세 배제



(3) 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한-미 FTA 제4.3조제10항·제11항)

- (특혜관세 적용중지) 수입당사국은 검증진행 동안 자국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중지가능
- (특혜관세 적용배제) 수입당사국이 검증요청한 이후 12월 이내에 수출당사국의 ①회신이 없거나 ②‘원산지를 불인정하는’ 회신이 온 경우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 가능
- (명단공표) 수입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할 수 있음
 -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섬유·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관 조치를 회피한 자
 - 섬유·의류를 생산하거나 생산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자

V. 기타 집행사항

▶ 2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

- 가. 일시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 라. 운동경기용 물품

- 해당물품의 일시반입 기간은 일시입국자의 최초출국일 또는 1년이며, 연장 가능
[※ 관세법 제97조, 여행차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3조(재반출면세 기간) 참조]

- 해당물품의 일시반입 요건은 특례법 시행규칙*을 준용

*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항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3.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4.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5.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 재수출 대상인 경우, 감면관세액의 110%이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간 수입되는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②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리 · 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참조]협정 제2.6조(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는 특례법 시행규칙*을 준용

*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③ 제1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수리 또는 가공 후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10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관세면제대상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I
- II
- III
- IV
- V

《※ (참조) 한-미 FTA에 따른 관세감면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11조의4		감면부호
①항	1호,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411
	2호,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EF81111412
	3호,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EF81111413
	4호, 운동경기용 물품	EF81111414
③항	1호,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41
	2호,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EF81111442

[참조] 협정문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제2.7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2. Blanket Period (원산지표관증명기간)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____/____/____ To: ____/____/____ (부타) (까자)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3.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4.Importer (수입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Telephone (전화)
	Fax (팩스)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E-mail (전자주소)

5.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

Serial No.(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 · 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2002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1)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

(특이사항)

I certify that :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__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 (작성자 성명)	Title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Telephone : (전화번호)
____/____/____	Fax : (팩스번호)
	____/____/____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입자, 생산자 린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참조]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1228, 2012.3.20)

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인정범위

①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적용 가능

-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라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② HS품목번호와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권고서식의 경우 : WO, PSR, PE는 원산지증명인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형식요건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님
- PSR을 CTH, RVC 등으로 기재한 경우 : 해당 HS품목번호와 PSR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맞아야 적용 가능

※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③ HS품목번호와 품명의 일치여부

- HS품목번호에 따른 거래품명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수입신고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일치여부는 통관·심사부서에서 확인할 사항

④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증명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적용 가능

-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이므로 적용 불가

⑤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인정범위

-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가명명이 표시되어 있거나, 동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한 경우 적용 가능

※ 다만, 원산지 국가명명이 표시된 경우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이후 원산지 검증시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2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처리 방법

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 안내 방법 : 구두, 안내문 발송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스탬프 날인 등

(안내 문구 예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증명서 발급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FTA특례법에 의하여 협정 관세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입자'가 원산지 자율증명하는 경우 '생산자' 기재 여부

-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동 협정 제6.1조, 제6.17조 및 제6.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를 표기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유 등으로 '수입자'가 '생산자'를 알지 못하여도 그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3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 가능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4 원산지포괄증명의 포괄기간 인정 범위

- 포괄증명은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 선적된 물품에 적용
- 증명일 이전의 포괄기간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적용 불가

5 원산지증명서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⑩항 '발급번호' 기재 방법

- 해당 수입물품의 송품장 발급번호를 기재
-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자를 기재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일련번호 기재

6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

- ① HS품목번호 : HS2002와 HS2012에 따른 품목번호를 병기
(예시) 560110(HS2002), 961900(HS2012)
- ② 단일선적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송품장번호를 기재
- ③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기재 문구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This document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ature:
Tit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Date:

※ [붙임2] 'US CB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참조

※ 붙임 1 : 원산지자율증명 수입자의 의무사항

1. '물품 수입자' 관련 의무 사항

-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관련 의무 사항

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인으로서의 의무 사항

-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동 협정 제6.13조(원산지상품) 및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기록과 제6.17조(기록유지요건)제1항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

② 특례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의무 사항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름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적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 서류) 제3항

- 수입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동 지침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함

- 1호.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 2호. 수입신고 번호 및 수리일자
- 3호.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 4호. 생산자 또는 공급자
- 5호. 수출자 및 수출국명
- 6호.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준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 준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 증명절차)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2720, 2012.6.19)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의 포괄증명 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와 포괄 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업무 처리시
 - 협정관세 적용 후 관할 FTA원산지조사업무 담당부서로 인계
 - 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075('12.3.12))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사전확인'업무 처리시
 - '사용불가' 스탬프 사용 금지(협정관세적용 신청 허용 후 검증)

FTA 활용애로 신고방법



①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에서 “FTA 활용 애로신고” 선택



② “FTA애로사항 신고하기” 선택



③ FTA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후 “보내기”를 클릭



④ 신고세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FTA 활용애로에 대해 상담

< FTA 활용애로 담당자 연락처 >

세관	담당자	전화번호	fax	e-mail
서울	강형근	02-510-1703	02-2015-7871	fta-seoul@customs.go.kr
부산	송윤제	051-620-6635	051-620-1140	fta030@customs.go.kr
인천공항	김성삼	032-722-4195	032-722-4209	fta040@customs.go.kr
인천	이홍현	032-452-3392	032-891-9186	fta020@customs.go.kr
대구	남정웅	053-664-5252	053-664-5239	namjw3@customs.go.kr
광주	박주영	062-975-8054	062-975-8049	pjy04@customs.go.kr
평택	오창진	031-8054-7044	031-8054-7046	tristan21@customs.go.kr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ashed lines.

- I
- II
- III
- IV
- V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ashed lines.

- I
- II
- III
- IV
- V



해외 FTA 활용애로 해결 사례집

- **발행일** 2012년 11월
- **발행처**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 **편 집** 박철구 FTA 집행기획관
서재용 FTA 협력담당관
관세청 : 백형민, 김동수, 김태봉, 박철완, 최영훈,
박문숙, 송민수, 김순덕, 고현주
세 관 : 강형근, 박종호, 신광주, 이홍현, 송윤제,
남정웅, 박주영, 오창진
- **인 쇄** 국고 (042)637-2177

이 책의 저작권은 관세청에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해외 FTA
활용어로
해결 사례집



관 세 청
KOREA CUSTOMS SERVICE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